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00-000608-01

선등록 실용신안 심사가이드

2006. 4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선등록 실용신안 심사가이드

2006. 4

발간에 즈음하여

본 선등록 실용신안 심사가이드는 '03년 제정된 『실용신안선등록 기술평가 가이드』에 '04년 제정된 『심사지침서의 기초적 요건 심사』의 내용을 추가하고, 그 동안의 제도 및 심사환경의 변화와 관례 및 심사사례 등을 폭넓게 반영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심사가이드는 1999년 6월 30일 이후부터 2006년 9월 30일 까지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1998. 9.23자 법률 제5577호부터 2005. 5.31자 법률 제7555호 까지 적용되는 출원)에 대한 기초적 요건 심사와 기술평가의 심사에 적용합니다.

본 심사가이드의 내용이 실용신안법 등 관련 법령과 특허·실용신안심사 사무취급규정 등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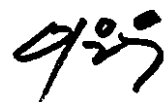
심사관은 소관 기술분야의 출원에 대하여 본 심사가이드와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와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심사정책팀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이드가 심사관에게는 정확한 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출원인에게는 효율적인 특허관리의 지침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와중에서도 본 심사가이드의 개정에 참여하신 실무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 4.

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장 이 은 우



목 차

제1장 기초적 요건 심사	1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3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3
2.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구별	3
3. 실용신안제도 절차	7
제2절 기초적 요건	11
1. 기초적 요건의 의의	11
2. 관련규정	11
3. 기초적 요건심사 사항	12
제3절 기초적요건 심사절차	37
1. 심사의 착수	38
2. 보정시기	38
3. 보정범위	38
4. 보정명령	38
5. 보정명령 이후의 처리	39
제2장 기술평가 가이드	41
제1절 기술평가제도의 취지	43
제2절 기술평가의 청구	44
1. 관련규정	44

2. 기술평가 청구인	44
3. 기술평가청구의 범위	45
4. 기술평가 청구시기	45
5. 기술평가청구 횟수	46
제3절 예고등록의뢰	47
1. 예고등록의 취지	47
2. 관련규정	47
3. 예고등록의뢰	47
제4절 기술평가	49
1. 관련규정	49
2. 기술평가의 착수	51
3. 기술평가의 대상	51
4. 기술평가	51
5. 정보제공제도와 기술평가	58
6. 기술평가와 이의신청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59
7. 기술평가와 무효심판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61
제5절 정정청구	62
1. 기술평가 과정에서 정정청구제도의 취지	62
2. 관련규정	62
3. 기술평가 정정청구제도의 성격	64
4. 정정청구시기, 정정청구회수 등	66
5. 정정청구인, 정정청구대상, 정정청구서	66
6. 정정의 범위 및 정정청구의 취급	68
7. 정정청구에 대한 판단	85
8.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98
9. 정정의 효과	106
10.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공고 및 정정공고 의뢰방법	107

제6절 기술평가결정서의 작성	108
1. 기술평가결정서 작성시 유의할 점	108
2. 기술평가결정서 문형	110
 제7절 확정등록의뢰	166
1. 확정등록의 취지	166
2. 관련규정	166
3. 확정등록의뢰의 시기	166
4. 확정등록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167
5. 기술평가결정 형태별 확정등록의뢰 표준문안	169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173
제1절 실용신안법	175
제2절 실용신안법 시행령	216
제3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220

제1장 기초적 요건 심사

제 1절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제 2절 기초적 요건

제 3절 기초적요건 심사절차

제1절 실용신안제도의 개요

1. 실용신안제도의 의의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특허제도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발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우수한 기술지식을 공개토록 하여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운용해 왔다.

실용신안제도의 내용과 운용형태는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며 크게는 심사주의제도와 무심사주의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무심사주의에 심사주의를 가미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즉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기술평가를 청구한 경우에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적 요건을 심사하여 권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2.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구별

(1) 보호의 대상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중 고도한 것」인데 비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이다(특 제2조, 실 제2조). 즉, 창작으로서 발명은 고도일 것을 필요로 하는데 비해 고안은 창작이기만 하면 충분하며 고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모든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데 비하여,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컨대 「방법」 등은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권리의 부여방법

실용신안제도는 권리의 부여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허제도와 다르다. 특허제도는 권리의 안정성을 중시하여 심사주의(신규성·진보성 등 권리부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는데 반해 실용신안제도는 조기등록을 위해 무심사주의(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를 채용하고

있다. 즉, 실용신안제도는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한 후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출원인에게 출원서를 완벽하게 작성할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3) 실체심사 및 출원인(권리자)의 대응

특허제도에서는 실체심사 후 등록이 이루어지나 실용신안제도에서는 먼저 등록된 후 기술평가단계에서 실체심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실용신안의 기술평가 항목은 특허의 심사 항목과 극히 유사하다. 다만, 고안의 단일성, 청구범위기재방법 등이 기초적 요건심사에서 이루어지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술평가에 있어서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대하여 권리자는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의 심사와 정에서 하는 보정에 비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4) 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출원일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와 같이 실용신안의 권리기간이 짧은 것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기술 또는 소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독일, 중국, 일본 등과 유사하다.

(5)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

특허와 실용신안제도 모두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 의해 권리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제도는 기술평가에 의해서도 권리가 취소될 수 있다.

(6) 권리행사

특허제도에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자에게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등록 전은 출원공개이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설정등록시까지의 실시에 대하여 보상금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침해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실용신안등록이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실 제44조, 제45조). 특허제도에서는 등록 후에 침해자는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나, 실용신안제도에서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실용신안권에 한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특 제130조, 실 제46조).

(7) 공개제도

실용신안제도에서는 출원이 조기에 등록 및 등록공고가 이루어지므로 특허제도와는 달리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특허는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실용신안은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 당해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은 등록실용신안의 등록이 유지되지 않아야한다는 취지로 제출된 것이므로 설사 등록공고 전에 제출되었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반려하지 않고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등에 참고한다.

(8) 등록료 및 수수료

실용신안은 소발명일 뿐 아니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출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출원료, 기술평가(심사)청구료, 등록료 등이 특허보다 저렴하다. 다만, 우선권주장신청료, 보정료, 기간연장신청료, 이의신청료, 정정청구료, 심판청구료 등은 특허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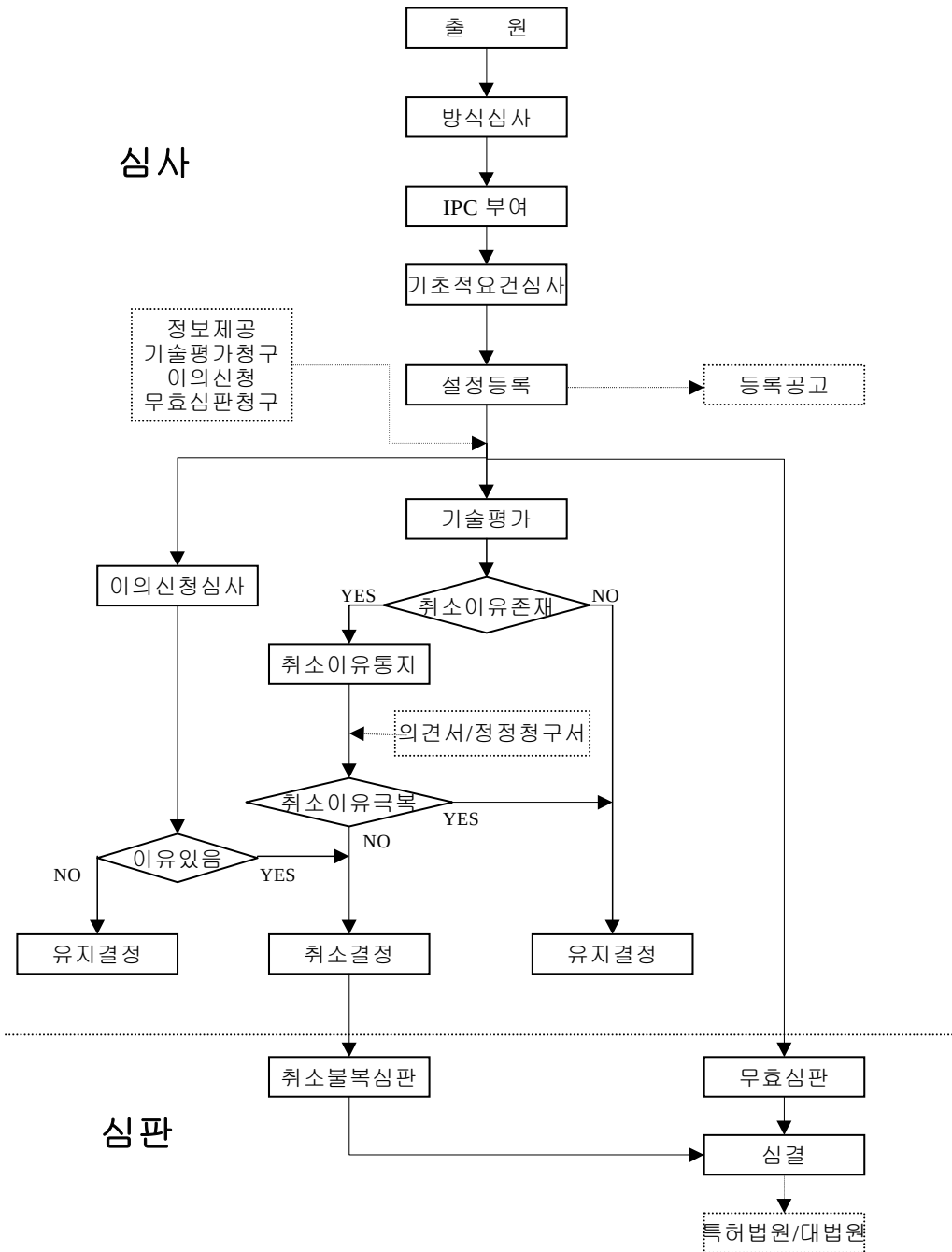
특허 심사청구료의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에 대한 전액 면제제도와 개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일부 감액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의 경우 전액 면제제도는 존재하나 일부 감액제도는 없다.

특허제도와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비교

구 분		실용신안 선등록	특 허
등록	보호대상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실§2, 5)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2)
	등록요건	기초적 요건(실§12,35)	신규성, 진보성 등 실체적 요건(특§62, 66)
	명세서등 보정시기	출원후 2월이내(실칙§9) 보정명령후 1월이내(실칙§14)	특허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 또는 최초거절이유통지 받기 전(특§47) 거절이유통지 의견서제출기간내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결정방법	설정등록 또는 각하결정	특허결정 또는 특허거절결정
권리 행사	권리존속기간	10년	20년
	권리행사의 요건	기술평가유지결정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 가능(실§44)	등록
	권리자의 책임	권리행사후 무효 또는 취소 시 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다만 기술평가유지결정에 근거할 경우 면책(실§45)	-
	침해자의 과실추정	기술평가유지결정 후(실§46)	등록 후(특§130)
권리 취소 무효	이의신청	등록공고일부터 3월이내에 누구든지 가능(실§47)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가능(특§69)
	기술평가/심사청구	등록 후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실§21)	출원부터 5년 이내 누구든지 가능, 취하할 수 없음(특§59)
	무효심판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실§49)	설정등록이후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특§133)
기타	우선심사제도	없음	있음(특§61)
	진보성	극히 용이하게 고안가능한지 여부(실§5)	용이하게 발명가능한지 여부(특§29)
	정정가능절차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기술평가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3. 실용신안제도 절차

o 실용신안제도의 흐름도



(1) 출원

출원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고안의 명칭,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시에는 출원료 등의 수수료와 최초 1년분의 등록료도 납부(실 제29조②)하여야 한다.

(2) 방식심사

방식심사는 출원인 등이 제출한 서류가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서류를 최초로 접수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심사관이 심사진행 중 방식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접수부서로 통지한다. 다만, 접수부서에서 처리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명령하며, 보정명령에 대한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분한다(실 제3조, 제11조, 규정 제18조).

(3) 기초적 요건 심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아래의 기초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등록된다(실 제12조제2항).

- a.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 b.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
- c.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만족할 것
- d. 출원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 e.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지 않을 것
- f.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4) 보정

방식요건에 관한 보정은 그 출원절차가 무효 또는 각하되지 않은 한 설정등록이 이루어 질 때까지 가능하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은 출원일부터 2월 이내 (실칙 제9조)와 보정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다(실 제12조제3항).

(5) 등록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실용신안법 제11조 각호의 1 또는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출원이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이중출원이거나 이중출원의 기초출원인 경우에 있어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특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실 제35조②).

(6)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누구든지 등록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유는 기술평가취소이유와 거의 동일하나, 실용신안등록된 후 실용신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배된 경우는 이의신청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실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 제74조④).

(7) 실용신안 기술평가

실용신안권자가 침해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소멸 후에도 가능하다. 기술평가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실 제25조제4항).

(8)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실용신안제도에서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

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허제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실용신안제도는 기술평가절차에서도 정정이 가능하다. 한편, 특허제도에서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규정이 항상 적용되나 실용신안제도의 경우 기술평가를 제외한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9) 실용신안권의 행사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게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실 제44조).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 권리가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권리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기술평가에 의한 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 제45조).

(10)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실용신안의 설정등록 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무효심판은 그 권리가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실 제49조).

제2절 기초적 요건

1. 기초적 요건의 의의

실용신안법은 고안을 조기에 권리화하여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시에는 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등의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서 규정한 방식요건 외에도 일정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법 제12조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한 「기초적 요건」이다. 이러한 기초적 요건이나 방식요건을 심사함으로써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고안에 대한 출원 또는 실질적으로 출원서류의 형태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출원이 그대로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2. 관련규정

실용신안법 제12조

- ②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3. 기초적 요건심사 사항

3.1.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실 제12조제2항제1호)

실용신안법에서는 보호대상을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이외의 것을 대상으로 한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의 여부는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예컨대, 상세한 설명에 방법에 관한 고안과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에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또한 상세한 설명에 물품의 구성을 방법으로 기재하고 있다하더라도 청구항의 기재가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는 해당항목에 의하여 판단한다.

3.1.1.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

물품이란, 공간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유롭게 운반가능한 상품으로서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것을 말한다.

또한 도로, 건축물 등의 구조도 물품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물품의 형상

형상이란, 선이나 면 등으로 표현된 외형적 형상을 의미하며, 예컨대, 캠의 형상, 톱니바퀴의 치형, 공구의 날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2) 물품의 구조

구조란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구성으로 물품의 외관만이 아니라 평면도와 입면도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3) 물품의 조합

조합이란 물품의 사용시 또는 불사용시에 있어서 그 물품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것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상태에 있고, 또한, 그것들은 독립하여 일정한 구조 또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 사용에 의해 그것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하여 사용 가치를 받

회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볼트와 너트, 바둑판과 바둑돌, 트럼프 등을 들 수 있다.

(4)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의 판단

- 방법(예, 제조방법·사용방법·통신방법·처리방법 등)은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다.
- 동물품종, 식물품종은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다.
- 시퀀스(sequence) : 시퀀스(순서)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속하지 아니한다.

<예>

[고안의 명칭] 나사 압송 시퀀스

[청구항 1] 나사체결기의 나사통과센서 부착 압송시퀀스에 있어서, 압송시간의 설정과 나사압송용 공급기의 나사세퍼레이트 시간을 확보하는 시퀀스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송시퀀스

- 시스템(system) : 시스템은 방법과 장치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므로 청구항의 말미가 시스템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물품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 기능, 게임 등은 그 자체는 물품에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 을 갖는 장치」, 「... 로 구성된 게임기」 등으로 고안의 대상이 물품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
- 형상이 확정되지 않은, 예컨대, 기체상태·액체상태·분말형태의 물질 또는 재료 자체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물질이 일정한 형상을 갖는 물품의 일부로서 다른 부분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일정한 효과를 이루는 경우에는 물질이 포함된 물품은 등록이 가능하다.

<예> 수은온도계, 모래시계 등은 가능

- * 수은이나 모래 자체는 형상을 확정할 수 없어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나, 수은온도계나 모래시계에 있어서 수은과 모래는 외부의 유리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또한 온도계나 시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이루므로 수은온도계, 모래시계는 등록될 수 있다.

또한, 재료의 경우 재료가 물품의 형태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

<예1> 반죽된 치약의 재료 그 자체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치약 담은 튜브」라고 기재하여도 치약과 튜브가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치약 자체를 보호하는데 귀착하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예2> 재료의 일반적 형태로서 채택되고 있는 판상체, 봉상체(예 : 철판, 철봉)는 재료의 2차적 가공 편의상의 형태에 불과하므로, 실질상 재료자체와 동일 시해야만 할 것이므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으로 될 수 없다. 다만, 단순히 편의상의 형태가 아니고 일정한 형태를 지님으로써 종래품과 다른 특수한 작용효과를 이룰 경우에 그 형태는 등록이 가능하다(예 : 철판의 경우에도 표면에 체크무늬의 돌기부가 형성되어 그 돌기부에 의하여 종래품과 다른 특수한 작용효과를 이룰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다).

- 어떤 특정상황하에서 형성된 확정된 공간형상도 물품의 형상으로 볼 수 있다.

<예> 신규한 형상의 얼음컵, 낙하산 등은 가능

- 기능적 표현만으로 기재되어 형상·구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 녹슬지 않는 볼트

- 구조상의 특징은 외관상 명료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각적으로 보아 동일 구조라고 인정되는 것이라도 절단함으로써 또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의하여 구별할 수 있는 경우(재료의 상위, 가령 자성을 띤 면도칼의 날과 자성을 띠지 않은 날)는 구조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전자제품 회로, 도로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색을 달리하여 인쇄한 지도 등은 물품의 구조로 본다. 다만 지도 등이 기술적인 효과 없이 미적·정신적 효과만 갖는다면 비록 구조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의 고안으로 인정될 수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3.1.2. 고안

고안이란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

o 고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

- 자연법칙 자체 :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므로 자연법칙 자체는 고안이 아님

<예> 에너지보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등

- 발견 : 발견이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법칙을 단순히 찾아내는 것으로서 창작이 아니므로 고안이 아님

<예> 천연광물 등

- 자연법칙에 반하는 것 :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고안이 아님

<예> 영구기관 등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 :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이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경제법칙, 수학공식, 작도법 등), 인위적인 약속(게임의 규칙 등), 또는 인간의 정신활동(영업계획, 교수방법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안이 아님

이 경우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의 일부에 수학공식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청구항을 전체로 파악했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으면 고안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 : 2001허3453, 자연법칙]

... 자연법칙이란 자연의 영역에서 경험에 의하여 발견되는 법칙으로서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확실성을 가지고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칙(인과율)에 따르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하여도 반복하여 재현될 수 있는 것, 즉 재현 가능성 또는 반복가능성을 구비한 것이라야 한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인간의 추리력 기타 순지능적·정신적 활동에 의하여 발견되고 안출된 법칙(수학 또는 논리학적 법칙 등), 인위적인 결정(금융보험제도, 과세제도, 유희방법 등) 또는 경제학상의 법칙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것만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

- 기능 : 기능은 개인의 숙련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지식으로 제3자에 게 전달될 수 있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고안이 아님

<예> 악기 연주방법, 볼을 손가락으로 잡는 방법과 볼을 던지는 방법에 특징이 있는 투구방법 등

제1장 기초적 요건 심사

- 정보의 단순한 제시 :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정보의 제시가 신규한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의 제시수단은 고안이 될 수 있다.

<예> 기계의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녹음된 음악에만 특징이 있는 CD, 컴퓨터 프로그램 리스트 자체 등은 고안이 아님

- 미적 창조물 : 미적 창조물은 기술적인 면 이외의 시각적인 면을 가지며 그 평가도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효과 그 자체는 고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적 효과가 기술적 구성 혹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얻어지는 경우 미적 효과를 얻기 위한 수단은 고안에 해당될 수 있다.

<예> 회화, 조각 등은 고안이 아님

- 컴퓨터프로그램언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실행하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고안이 아님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고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형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제시한 수단에 의하여 고안자가 얻은 성과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즉 반복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은 고안이 아님
-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고안(미완성 고안) : 고안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 결여되어 있거나 또는 제시된 과제의 해결수단만으로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것은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고안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실험 데이터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고안이 당업자가 그 고안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미완성 고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실 제12조제2항제1호)에 우선하여 제12조제2항제4호에 근거하여 보정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례 : 1993후1810(1994.12.27), 완성된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언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그 판단은 특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실 제12조제2항제2호)

실용신안법 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안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2.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

-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국기 또는 훈장이 상징하는 국가, 훈공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당해 고안이 본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와 당해 고안의 공개 또는 사용이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 다만, 본래의 목적 이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결과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이 타당하다.
-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는 고안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한다.
 - 이 경우 고안 본래의 유익한 목적은 달성되지만 그 결과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를 제거하는 수단은 있는지와 그 효과의 득실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이 청구범위에 기재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사항이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있고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우려가 없을 때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세한 설명에서 제외하고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실령 제5조).

3.3.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실 제12조제2항제3호)

실용신안법 제9조제5항

- ⑤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용신안법시행령 제2조

-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 (1) 독립항(또는 종속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 부가하거나 한정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거나, 독립항(또는 종속항)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더라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지 않는 항은 종속항이라 할 수 없다.

o 다음의 경우는 독립항으로 취급한다.

-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감소시켜 기재하는 경우
-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치환하여 기재하는 경우

* 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경우 모두 종속항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독립항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의 중복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 가능

- (2) 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o 하나의 청구항에 둘 이상의 물품이 청구된 경우,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 청구항내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하는 경우 등은 이 조항에 위배된다.

<예1>

[청구항 1] X + Y로 이루어진 합판제조장치 및 그 제조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합판

* 하나의 청구항에 합판제조장치와 합판이 청구되어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예2>

[청구항 1] X + Y로 이루어진 합판제조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Z를 부가한 합판제조장치

[청구항 3] X + Y + Z 로 이루어진 합판제조장치

* 청구항 2와 청구항 3은 동일한 고안이므로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이다. 따라서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수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표현을 달리한 경우에는 권리를 명료하게 하여 출원인 및 제3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으므로 인정한다.

<예3>

[청구항 5] 청구항 3 또는 청구항 4의 장치로 제조되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의 물품

* 다수의 청구항을 중복하여 인용한 것으로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된 것이라 볼 수 없다.

(3)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 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자신의 청구항과 같은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는 본 규정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다.

(4)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o 택일적으로 기재한 예

-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1,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o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예

- 청구항 1,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 청구항 1 및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 장치

(5)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o 본 규정의 취지는 청구항의 해석이 과도하게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예>

[청구항 1] ... 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3]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4]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5] 청구항 3에 있어서, ... 장치

[청구항 6] 청구항 2 또는 청구항 5에 있어서, ... 장치

* 제4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제3항)을 인용하고 있어 위배되며, 제6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한 항(제3항)을 인용하고 있는 제5항을 인용하고 있어 본 규정에 위배된다.

(6)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7)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예1>

[청구항 가] [청구항 나] [청구항 다]

* 가, 나, 다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니며, 또한 행바꿈도 되어 있지 않아 본 규정에 위배된다.

<예2>

[청구항 1]

[청구항 3]

[청구항 2]

*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붙이지 아니함

3.4.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실 제12조제2항제3호)

실용신안법 제10조(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은 1고안을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고안에 대하여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용신안법시행령 제3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規定에 의한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3.4.1. 1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1출원요건은 기본적으로는 특허의 1출원요건[제4부제3절(특허출원의 범위)]의 規定을 준용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있어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졌는지 여부는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와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고안 간에 명확하게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이 없는 경우 또는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술이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행기술조사 없이 보정명령할 수 있다.

고안 간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이 존재하고 그 기술이 주지·관용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단일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 「주지기술」이란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술로 예를 들어 이에 관해 다수의 공지문헌이 존재하고 또한 업계에 알려져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을 말하며, 「관용기술」이란 주지기술로 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와 같이 1출원요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선행기술을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특허와 달리 선행기술 고려 없이 판단하는 이유는 실용신안의 경우 1출원요건이 기초적 요건심사 단계에서 심사되기 때문이다.

3.4.2. 단일성 판단의 예

<예1>

[청구항 1] : 특징 A를 갖는 콘베이어벨트X.

[청구항 2] : 특징 B를 갖는 콘베이어벨트Y.

[청구항 3] : 특징 A 및 특징 B를 갖는 콘베이어벨트Z.

* 특징 A와 특징 B가 각각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긴 하나 A와 B가 서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 청구항 1과 3사이, 2와 3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하나, 1과 2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예2>

[청구항 1] : 특징 A + B를 갖는 표시장치.

[청구항 2] : 청구항 1에 있어서, 특징 C를 부가한 표시장치.

[청구항 3] : 청구항 1에 있어서, 특징 D를 부가한 표시장치.

* 모든 청구항들에 동일한 기술인 「A + B」가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일 때 「A + B」에 의해서 청구항 1, 2 및 3 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A + B」가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 아닌 경우 청구항 1과 2, 1과 3사이에는 단일성이 없다. 또한 청구항 2와 3사이에 있어서 C와 D가 각각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라 하더라도 C와 D가 서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 청구항 2와 3사이에도 단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3>

[청구항 1] : 영상신호의 시간축 신장기를 구비한 송신기.

[청구항 2] : 영상신호의 시간축 압축기를 구비한 수신기.

[청구항 3] : 영상신호의 시간축 신장기를 구비한 송신기와 영상신호의 시간축 압축기를 구비한 수신기로 이루어진 영상신호용 전송장치.

* 청구항 1의 시간축 신장기와 청구항 2의 시간축 압축기가 각각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일 경우 이들은 또한 서로 상응하는 기술이므로 청구항 1과 2사이에는 단일성이 존재한다. 또한 청구항 3은 두 특별한 기술적인 특징을 모두 포함하므로 청구항 3은 청구항 1 및 2와 단일성을 갖는다.

※ 2001.2.2. 이전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실용신안이중출원의 단일성

이 경우의 이중출원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보므로, 출원의 단일성에 대하여 이전 실용신안법을 적용한다. 즉 물품에 관한 1독립항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볼트·너트와 같이 물품의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2이상의 독립항을 기재할 수 있다.

* 2001.2.3.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단일성 판단은 단일성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2003.6.13. 공포 및 시행)되었으나 개정전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는 개정사항이 관련 특허법원의 판례에 따라 심사실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던 사항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3.5. 명세서 또는 도면의 현저한 기재불비(실 제12조제2항제4호)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3.5.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현저한 기재불비

(1) 고안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청구항에 고안의 구성과는 관계없는 사항만을 기재하고 그 고안의 구조·구성 등 기술적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제주도 하루방

[고안의 상세한 설명] ... 제주도에서 나는 현무암으로 제주도의 상징인 하루방을 제조하였다.

*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생산지역 및 고안의 명칭으로서 이 고안의 구조·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o 청구항에 고안의 목적, 효과 또는 작용만이 기재되어 있고, 기술적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고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녹슬지 않는 볼트

[고안의 상세한 설명] ... 볼트 표면에 금도금을 하였으므로 녹이 발생되지 않는다.

* 청구항에는 고안의 효과만이 기재되어 있고 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불명료한 경우

- o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이 하나의 고안을 특정하는 것인지 아닌지가 불명료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케이스로부터 끌어내거나 분리할 수 있고 또한 CD본체 및 카세트테이프가 장착 가능한 트레이. 그 트레이를 케이스에 수납하는 레일부재를 구비한 슬라이드기구

* 청구항 1에 복수의 문장이 있어 「트레이」와 「슬라이드기구」에 관한 2개의 고안인지 「슬라이드기구」 1개의 고안인지 불명료함

- o 청구항의 말미에 「및」으로 연결되는 복수의 물품명이 기재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X 구조의 쿠션재를 이용한 소파 및 의자

* 청구항의 말미(末尾)에 「소파 및 의자」라는 복수의 물품을 기재하고 있어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다.

- o 청구항의 말미(末尾)가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바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세탁기의 세탁조의 내벽에 산(山)형 세로주름을 형성 한다.

* 청구항의 말미를 「...을 형성한다」라고 하고 있어 보호대상이 물품인지 아닌지 특정할 수 없어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 o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여 청구항을 기재할 때 그 인용이 부적절하여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인 추가브리지 ...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정합브리지

[청구항 2] 전기(前記) 추가브리지를 더욱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피던스 정합브리지

* 독립항인 청구항 2에서 「전기 추가브리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다.

- o 도면을 인용하여 기재한 결과 그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도면에 제시한 제1도, 제2도 및 받침대(4)를 갖춘 다목적 쓰레기통

- * 청구항에 도면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고안을 청구항의 기재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또한 도면중 어느 형상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기재가 현저히 불명료하다.

- o 구체적인 부분이나 부품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면에 기재된 기호, 번호만을 이용하여 기재한 결과 그 내용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1>

[청구항 1] 3에 4의 측면을 고정하고, …… 5의 단부를 접착한 양복장

<예2>

[청구항 1] 연필의 3의 부분에 구름방지부를 형성한 연필

- o 고유명사 등을 기재함으로써 청구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홍길동식 연필깎이

- * 청구항의 「홍길동식」이라는 표현은 단지 고안자 등의 고유명사를 기재하고 있을 뿐 고안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아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것임

- o 각 청구항의 기재내용이 기술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국어로서 부자연스러워서 고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1>

[청구항 1] 모터가 콤프레서에서 냉매를 측온(測溫)하는 냉장고

<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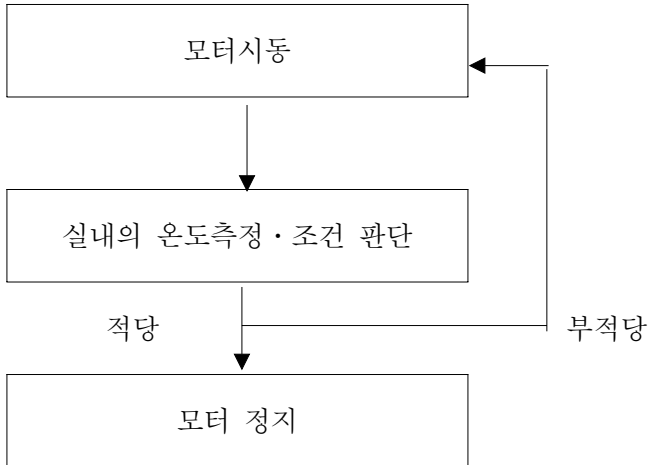
[청구항 1] var x, y, z, u : interger ;
begin z := 0 ; u := x ;
repeat
z : z+ y ; u := u-1
until u = 0
end

의 처리를 하는 회로를 갖는 냉장고

- * 청구항이 프로그램 언어 등으로 기재되어 고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다.

<예3>

[청구항 1]



상기 순서에 따라서 실내의 온도를 제어하는 냉장고

- * 청구항이 블록도를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어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다.
- o 청구항의 기재에 오자, 탈자가 있어서 고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세탁기의 발수기에 있어서, 탈수조의 형성하여 안전덮개(3)의 평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세탁기의 탈수조.

- * 오자(「발수기」, 「평태」) 및 탈자(「탈수조의」와 「형성하여」 사이)가 있어 고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다.
- o 다른 문헌을 인용하여 기재한 결과 그 문헌을 참조하지 아니하면 고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예>

[청구항 1] 문헌명 「고분자공업화학」 ○○출판사, 1996. 9. 10 초판 1쇄 발행
……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 물통

* 청구항에 다른 문헌을 인용하고 있어 그 문헌을 참조하지 아니하면 그 고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항의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확하다.

- 기타, 청구범위에 고안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구성이 누락된 경우, 구성 상호간의 결합관계가 없어 기재가 현저히 불명료한 경우, 상세한 설명에 없는 고안을 청구한 경우 등은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3.5.2.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현저한 기재불비

-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그 결과 당업자가 고안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 고안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그 해결수단의 기재가 없거나 불명확하고, 그 결과 당업자가 고안의 기술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 「고안의 명칭」이 고안의 내용을 간명히 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일견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3.5.3. 도면의 현저한 기재불비

-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도면이 출원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다른 출원의 도면이 첨부된 경우, 도면의 간단한 설명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으로 일견하여 도면의 기재내용이 불명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 도면을 사진으로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재가 현저히 불명료한 것에 해당하여 기초적 요건에 위배된다. 다만, 결정구조, 금속조직, 입자의 구조, 오실로스코프

등과 같이 특칙 별지 제12호서식 기재요령의 2(도면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도하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들을 표현한 사진도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진은 명료한 것으로 공보에 게재할 수 있는 것에 한하며, 칼라사진은 필수적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 심사관이 심사도중 도면의 기재가 특칙 제12호서식의 기재요령에 따라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12조에 의한 보정명령 시 함께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보정명령 후 도면의 기재요령에 맞게 보정되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각하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방식위배로 보정을 명(실 제11조)한 후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처분(실 제3조)하여야 한다.

3.6. 보정의 허용범위(실 제12조제2항제5호)

실용신안법 제14조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3.6.1. 신규사항의 판단

-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하 「신규사항」이라 한다)을 포함할 수 없다.
- 당업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최초 명세서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자명한 사항은 신규사항이라 할 수 없다. 여기서 「자명한 사항」이란 그 사항 자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재는 없으나 당업자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신규사항의 판단대상은 보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며 이 중 어느 곳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 있어서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실 제65조③). 즉 신규사항의 추가여부는 번역문(도면의 그림부분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도면)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출원서의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없는 사항이 번역문에 추가되고 그 번역문의 범위 내에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보정은 인정되나, 추후에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이유가 될 수 있다(실 제67조, 제68조).

3.6.2. 신규사항의 세부판단

-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최초 명세서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규사항 여부판단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
- 요약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규사항 여부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미완성고안을 완성시키는 보정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기재라는 것이 명세서 기재 전체로 보아 자명하거나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으로 보아 명확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수정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볼 수 없다.
- 명세서 및 도면 중에 상충하는 2개 이상의 기재 중 어느 것이 올바른지가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당업자에게 자명한 때에 올바른 기재로 일치시키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로 볼 수 없다.

제1장 기초적 요건 심사

- 도면이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근거하여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보정한 사항이 당업자에게 자명한 사항인 경우에는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사항을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 상세한 설명의 실시 예에 나타난 수치를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추가가 아니지만, 실시예의 기재로부터 특정의 수치범위를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것(ex, 20℃ 및 30℃에서의 실시 예로부터 20~30℃의 온도범위를 청구범위에 추가하는 경우)은 실시 예에 나타난 수치가 일정한 목적 및 작용·효과가 지속되는 수치범위의 경계치를 의미하는 것이 자명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 이른바 제외클레임으로 하는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가 아니다.
- 수치한정의 범위를 변경하는 보정, 고안의 구성요소를 상위개념 또는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보정, 도면의 보정, 실시예를 추가하는 보정, 고안의 목적이나 효과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보정 등의 경우 그 보정된 사항이 최초 명세서 등의 기재로부터 자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사항추가이다.
- 단지 선행기술 문헌명만을 명세서에 추가하는 보정은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다.
- 실시예를 추가하거나 실험데이터를 추가하는 보정은 원칙적으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 명세서 기재의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은 일반적으로 신규사항추가가 아니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있어서 남아있는 구성요소에 의하여 새롭게 고안이 구성되고 그 고안이 보정 이전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로부터 자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사항추가이다.

3.6.3. 기초적 요건심사에서의 신규사항 처리

- 기초적 요건심사에 있어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규사항과 기타 보정명령사항을 함께 기재하여 보정명령한다. 다만, 신규사항이 삭제된 경우 보정명령사항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우선적으로 신규사항에 대하여 보

정명령할 수 있다.

- 기초적 요건심사에서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심사관의 보정명령 후 이미 지적된 사항은 해소하면서 새로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관은 다시 보정명령하여야 한다.
- 심사관의 보정명령통지에 대응한 보정에서 보정명령사항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경우 해소되지 않은 보정명령사항을 이유로 출원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추가된 신규사항에 대해서는 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 단계 등 향후의 절차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출원각하결정통지서」 하단에 추가된 신규사항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병기할 수 있다. 이 때 상기 참고사항을 출원각하결정 이유에 포함시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초적 요건심사에서 신규사항추가가 간과되고 설정등록된 경우, 그 신규사항은 기술평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서 취소이유 또는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
- 기초적 요건심사에서 신규사항추가가 간과되어 설정등록된 후 기술평가에서 신규사항추가를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한 경우, 권리자는 신규사항을 삭제하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나 그 삭제가 정정인정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그 정정청구는 불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청구범위와 무관하게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을 한 후 등록되고, 이후 기술평가의 정정청구에서 추가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 그 삭제가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닌 때 그 정정청구는 불인정될 수 있다.

3.7. 반려(실칙 제7조), 보정(실 제11조) 등

심사관은 심사진행 중에 접수서류가 실용신안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 등이 적절하게 납부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당해문서의 접수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부서에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을 명한 후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규정 제18조). 반려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은 그 사실을 접수부서로 통지하거나, 직접 청장명의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할 수 있다.

(1)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출원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또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극히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예, 청구범위에 독립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잘못 작성된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실 제9조②, 실칙 제6조①). 따라서 요약서가 첨부되지 않은 출원서는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정명령의 대상이 된다(실 제11조). 또한 첨부된 요약서가 실칙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칙 별지13호서식의 요약서 기재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지 않고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에도 보정명령(실 제1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흠결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절차를 무효로 한다(실 제3조).

(3) 명세서 및 도면에 영문기재가 포함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가 국어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명세서의 일부가 외국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외국어 기재에도 불구하고 출원고안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반려하지 않고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시행규칙 제4조의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정을 명한다.

(4) 출원서와 명세서의 고안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원서에 기재된 고안의 명칭이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명칭과 달리 잘못 기재된 경우 실용신안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위배[실칙 별지1호서식(실용신안등록출원서)의 기재요령5의 “고안의 국문명칭란에는 명세서의 고안의 명칭란에 기재된 국문명칭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하며”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명한 후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서지사항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명세서의 고안의 명칭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용신안법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에 위배[특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재요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명한 후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실용신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여야한다[특칙 별지 제5호서식 기재요령10.다.(9)]. 다만, 기초적 요건에 해당하는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기초적 요건에 대한 보정명령서에 고안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적 요건에 대한 보정명령 후 고안의 명칭이 적합하게 보정되지 않은 사유로 그 출원을 각하 할 수는 없으며 별도로 법 제11조에 의한 보정명령을 다시 하여야한다.

보정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대상이 변경되어 명세서의 고안의 명칭을 변경하여야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명세서상의 고안의 명칭과 함께 출원서상의 고안의 명칭도 보정하여야한다. 이 경우 명세서상의 고안의 명칭은 「명세서 등 보정서」, 출원서상의 고안의 명칭은 「서지사항 보정서」에 의한다.

(5)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

실용신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법정기간)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실칙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청구 또는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 심판원장 또는 심사관이 실용신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명령에 근거하여 정한 기간(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서류는 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반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반려하여야한다(실칙 제7조제1항제10호). 예컨대, 기초적 요건심사와 관련한 보정서가 각하처분 이후에 제출된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

법정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한다(실칙 제7조제1항제8호). 법정기간 중 연장이 허용되는 것에는 특허법 제70조(실 제48조에서 준용)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또는 실용신안법 제54조 및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이 있다(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 제15조).

특허법 제70조(실 제48조에서 준용)제1항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 실용신안법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기간연장신청서는 소명기회 부여 후 반려한다(실칙 제7조제1항제9호).

실용신안에 있어서 지정기간의 연장대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연장기간 및 연장회수는 특허와 달리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초적 요건심사와 기술평가 모두 1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규정 제31조, 제38조). 이와 관련하여 통상 통지서 상에 안내문구를 기재하여 통지하며, 이 경우 별도로 기간연장불승인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6) 국내 및 조약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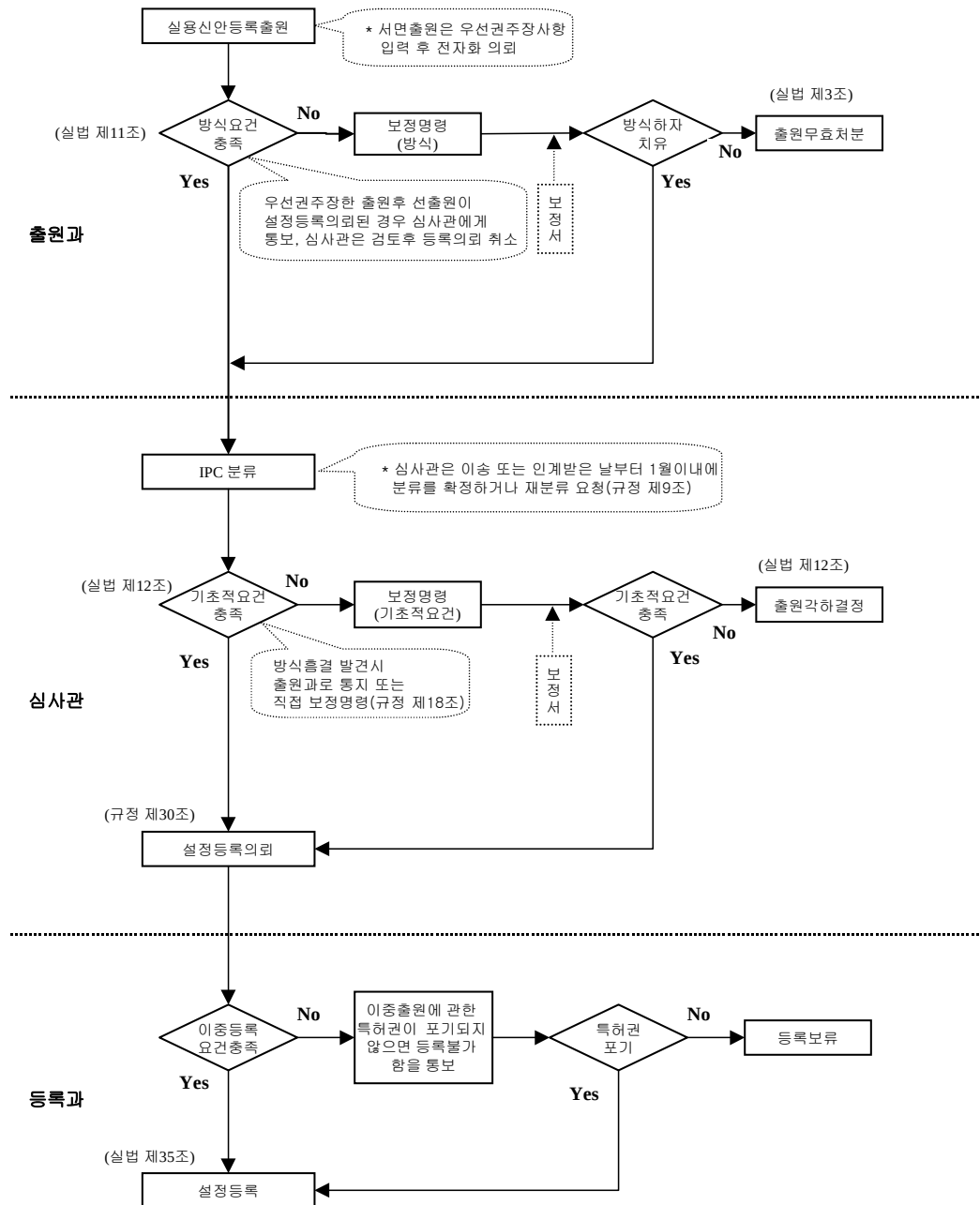
우선권주장에 대한 출원인 동일, 기간준수, 수수료 납부 등 방식사항이 적합한 경우에는 제출 및 적합을 클릭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출원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과에서 처리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부적합을 클릭하여 보정을 명(실 제11조)한 후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실 제3조) 한다.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 서류 또는 서면은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설정등록 당시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는 출원서의 기재사항만으로 판단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및 적합을 클릭한 후 기술평가단계에서 재검토하여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정명령 후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하고 등록원부에 대해 직권경정 의뢰한다.

국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출원시 선출원이 이미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정명령 후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한다. 반대로 선출원의 등록이전에 정당하게 우선권주장 된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취하되므로 선출원이 설정등록의뢰된 경우에는 등록의뢰를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과에서는 심사관의 취소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및 등록료반환 등의 조치를 한다 [문서 등록56130-55호(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등록건에 대한 처리방안, 2000.3.3.)].

제3절 기초적요건 심사절차

o 기초적 요건심사 흐름도



1. 심사의 착수

-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부터 3월과 출원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1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등록의뢰 또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규정 제27조①).
- * 서류이송일은 출원일, 제출일 등의 하부 괄호 내에 표시됨

2. 보정시기

-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등에 대한 보정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2월 이내(실칙 제9조)
 - 기초적요건 위반으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그 지정기간이내(실 제12조③)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서가 보정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반려한다(실칙 제7조제1항제7호).

3. 보정범위

-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4. 보정명령

-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 명의로 1월의 지정기간을 주어 보정을 명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은 1월 1회에 한하며, 출원인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1월로 본다(실칙 제14조①, 규정 제31조).
- * 보정명령서상에 기간연장은 1월 1회에 한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안내하며 별도로 기간연장불승인예고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 보정명령시 유의사항
 - 보정명령의 대상이 일부 청구항인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청구항을 명기하고

청구항별로 보정명령을 한다.

- 발견된 모든 보정사항은 한 번의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일괄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정명령 후 새로운 보정명령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재차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 보정명령사유가 실법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중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과 해당 법조문이 상호 연계되도록 기재한다.

5. 보정명령 이후의 처리

- o 보정명령 후 심사처리는 보정서 제출기간 경과 후 1월과 관련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1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정 제27조②).
- o 실용신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어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록의뢰를 하여야 한다.
- o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통지한 보정명령사유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가 여전히 기초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 o 지정기간 이내에 보정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 o 보정명령 이후 제출된 보정서에 기 통지한 보정명령사유는 해소되었거나, 새로운 보정명령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재차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o 출원일부터 2월의 보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각하결정이나 등록의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기술평가 가이드

제 1 절 기술 평가제도의 취지

제 2 절 기술 평가의 청구

제 3 절 예고등록의뢰

제 4 절 기술 평가

제 5 절 정정청구

제 6 절 기술 평가결정서의 작성

제 7 절 확정등록의뢰

제1절 기술평가제도의 취지

-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에서는 실체적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방식심사와 기초적요건 심사만으로 권리가 부여되므로,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98. 9.23. 전문개정)
- 기술평가 과정에서는 등록된 고안이 신규성이나 진보성 위배 등 실용신안법 제 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결정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을 한다.
- 실용신안권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아 그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를 하여야 한다(실 §44). 또한, 실용신안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 그 권리가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될 경우, 제3자가 그 권리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45).

제2절 기술평가의 청구

1. 관련규정

법 제21조(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 취소되거나 이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 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신설 2001.2.3]

⑤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의 청구방법)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6.27]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2. 4. 삭제

2. 기술평가 청구인

-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의 청구인에 대한 제한은 없다.
-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은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

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실용신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동종업계의 이해관계인은 물론 제3자도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 재외자인 외국인은 실용신안법 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특허관리인에 의하여만 기술평가청구를 할 수 있다.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4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기술평가청구의 범위

- 기술평가청구는 설정등록된 등록실용신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다만 2001.6.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부칙(2001.2.3.)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청구항별로 할 수 있다.

※ 기술평가 청구를 함에 있어서 청구항이 2항 이상인 경우,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도록 규정을 변경한 이유는 하위개념에 해당하는 종속항에 대해서만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당해 청구항이 등록취소될 때 상위개념에 해당하는 청구항들은 당연히 등록취소되어야 함에도 취소되지 않아 부실권리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4. 기술평가 청구시기

-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는 「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된 이후에는 언제라도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 또한,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 청구는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이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 기술평가 청구를 실용신안권의 소멸 후에도 가능하게 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나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된 경우에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5. 기술평가청구 횟수

- 기술평가청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실용신안법 제21조제4항 단서규정에 동법 제5조제3항·제4항(확대된 선원) 또는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선출원)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 PCT출원에 대하여는 선원검색이 국내에 진입한 때(우선일부터 30개월, 우선일부터 30개월 되는 날이 2006. 3. 3. 이후인 경우는 31개월)에 가능하므로 실용신안의 기술평가가 실용신안의 출원일부터 30(31)개월 이내에 유지결정된 경우 30(31)개월 이후에 추가로 1회의 기술평가청구를 할 수 있다.
- ※ 이 경우 선행기술자료조사는 처음의 기술평가에서 조사하지 못한 범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절 예고등록의뢰

1. 예고등록의 취지

- 예고등록은 등록 본래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제3자의 대항요건에 직접 관계가 없는 등록으로, 권리에 관한 분쟁 등이 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특별한 등록제도로써 제3자에게 경고를 주는 효과 외에는 별도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예고등록제도는 선등록된 실용신안등록에 기술평가가 청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2. 관련규정

실용신안법

제23조(청구사실의 공보게재)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시에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실용신안등록공고후에 등록실용신안에 관하여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령

제2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신청·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예고등록의뢰

- 2001.7.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 자동으로 예고등록이 이루어진다.
- ▣ 2001.6.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예고등록을 의뢰한다.

- 전산처리 절차상 기술평가청구서의 【기술평가청구의 취지】란에 기재된 사항이 자동으로 예고등록의뢰서상의 청구의 취지란에 옮겨지고, 이 청구의 취지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예고등록이 이루어진다.
- 기술평가청구에 관해 예고등록의뢰 된 청구항의 수와 확정등록의뢰서상에 기재된 청구항의 수(등록유지, 등록취소, 삭제된 청구항의 합)는 항상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청구항 삭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구항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추가의 예고등록의뢰는 하지 않는다.

※ 기술평가 도중에 청구항을 증가하여 정정을 청구한 경우 일반적으로 정정인정은 불가하므로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추가의 예고등록의뢰는 불필요하다.

■ 예고등록의뢰 문구 예문

- 청구항 전체를 기술평가 청구한 경우

예1) “실용신안등록 제1234567호는 그 등록을 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예2) “실용신안등록 제1234567호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 ▶ 청구항 중의 일부를 기술평가 청구한 경우(2001.6.30. 이전 출원)

예1) “실용신안등록 제1234567호 중 청구범위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는 결정을 구함
예2) “실용신안등록 제1234567호 중 청구범위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는 결정을 구함

제4절 기술평가

1. 관련규정

제25조(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

①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이 법 제5조·제7조·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4. 실용신안등록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②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그 실용신안등록이 동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개정 2001.2.3]

〈심사 및 심판절차별 확인사항 비교표〉

사 유	기 초 요 건	기 술 평 가	정 보 제 공	이 의 신 청	무 효 심 판
외국인의 권리능력(特 §25)	×	○	◎	○	○
실용신안등록의 요건(實 §5)	△	○	○	○	○
불등록고안(實 §7)	○	○	○	○	○
선출원주의(實 §8①~④)	×	○	○	○	○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요건(實 §9③, ④)	△	○	○	○	○
청구범위 기재방법(實 §9⑤)	○	×	×	×	×
1실용신안출원의 범위(實 §10)	○	×	×	×	×
특허 받을 수 있는 자(特 §33①)	×	○	◎	○	○
공동출원(特 §44)	×	○	◎	○	○
조약에 위반된 경우	×	○	◎	○	○
실용신안등록후 실용신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	◎	×	○
이중등록된 경우(제3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위반된 경우)	×	◎	◎	○	○
신규사항의 추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	◎	◎	◎

※ △ : 일부만 적용, ◎ : 2001.7.1 시행 개정법에서 추가된 내용임

2. 기술평가의 착수

- 심사관은 기술평가 청구일부터 7월 이내에 기술평가를 착수하여야 한다.(심사관 계사무취급규정 제32조제1항)

3. 기술평가의 대상

- 기술평가의 대상은 기술평가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이다.
- 기술평가 과정에서는 상기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평가·결정한다.

4. 기술평가

4.1.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의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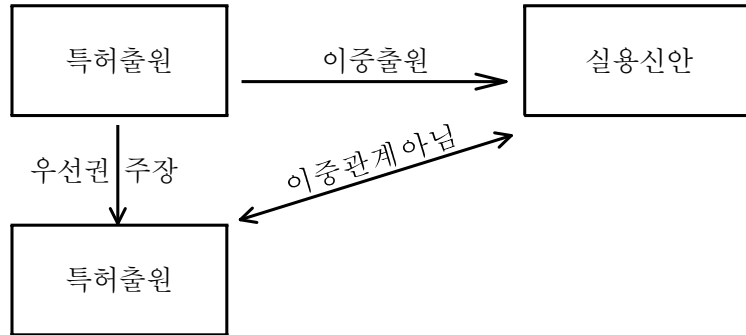
- (1)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대로 고안을 인정한다.
- (2)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고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조하여 해석하면 명확하게 파악되는 경우에는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조하여 고안을 인정한다.
- (3)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을 참조하여도 고안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재가 불명확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에 대해 유효한 선행기술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2. 등록취소사유 및 의견제출통지

-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이 등록취소사유(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①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의 지위(실 §5조)
 - ② 선출원주의(실 §8조제1항 내지 제4항)
 - ③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요건(실 §9조제3항, 제4항)

- ④ 외국인의 권리능력(실 §4조에서 준용하는 특 §25조)
 - ⑤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실 §7조)
 - 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특허청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 및 공동발명의 경우(실 §20조에서 준용하는 특 §33조①)
 - ⑦ 공동출원(실 §20조에서 준용하는 특 §44조)
 - ⑧ 조약에 위반된 경우
 - ⑨ 실용신안등록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실 §4조에서 준용하는 특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배된 경우
 - ⑩ 이중출원이 중복등록된 경우(실 §35조 2항 단서)
 - ⑪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된 경우(실 §14조)
- 각각의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이 상기 등록취소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관은 그 이유를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에게 통지하고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및 정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실용신안법 제25조제3항,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실§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청구항을 명시하여 의견제출통지를 하고 그 이유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해당 청구항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선출원(특허)에 대한 이중출원(실용신안)과 우선권주장출원(특허)은 이중출원 관계로 보지 않으므로 심사과정에서 이중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 간에 선원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산업자원부재결 제501176호1))

1) 산업자원부재결(행정심판) 전에는 선출원에 대한 이중출원과 우선권주장출원은 이중관계로 취급하여 심사과정에서는 선원 등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단계에서 그중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포기하도록 하였다.



4.3. 기술평가시 기타 심사사항

- 심사관은 기술평가시에 아래사항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한다.
 - ① 우선권주장이 있는 출원인 경우 그 주장의 인정 여부
 - ② 당해 출원이 분할출원, 이중출원인 경우 그 출원의 출원일을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 ③ 공지예외규정의 적용이 주장된 출원인 경우 그 주장의 인정 여부
- 실용신안법 및 실용신안법에 정하는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수수료 등이 적법하게 납부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우선권주장관련 방식사항을 만족하는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을 그 출원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청구항에 대하여 그 출원일을 소급할 수 없는 이유를 취소이유와 함께 기재하여 기술평가취소이유통지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33조).
- 분할출원, 이중출원, 공지예외적용주장이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기술평가취소이유통지와 별도로 불인정예고통지를 하며
 -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은 2월 이내로 하고 동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할출원, 이중출원, 공지예외적용 불인정 통지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34조).

※ 우선권주장관련 방식심사

우선권주장에 대한 출원인 동일, 기간준수, 수수료 납부 등 방식사항에 대한 심사는 출원서비스팀 소관이나 출원서비스팀에서 방식심사사항을 누락한 경우, 심사관은 기초적요건심사시 방식위배여부를 검토한 후 적법한 경우에는 제출 및 적합을 클릭하며, 부적법한 경우에는 부적합을 클릭하여 보정요구(실용신안법 제11조)한 후 보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실용신안법 제3조)한다.

다만, 외국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5항에 의하여 우선권주장 서류 또는 서면은 출원일로부터 1년 4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설정등록 당시에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에는 출원서의 기재사항만으로 판단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및 적합을 클릭한 후 기술평가단계에서 재검토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명령 후 무효처분하고 등록원부에 대해 직권경정의뢰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후출원의 출원시 선출원이 등록된 경우에는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정명령 후 우선권주장을 무효처분한다. 반대로 선출원이 등록되기 전에 정당하게 우선권주장 된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은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취하되므로 선출원이 이미 설정등록의뢰된 경우에는 등록의뢰를 취소하여야 하며 등록서비스팀에서는 심사관의 취소에 의거 직권말소등록 및 등록료반환 등의 조치를 한다[문서 등록56130-55호(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등록건에 대한 처리방안, 2000.3.3.)].

▣ 2001.6.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기초적요건 심사단계에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명세서 등’이라 함)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으므로, 기술평가 과정에서 자진보정 기간 또는 기초적요건 심사단계에서 행한 명세서 등의 보정이 요지변경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이 때는 구심사사무취급규정(제325호) 제35조에 의거 출원일변경 예고통지를 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다.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도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출원일변경 통지를 한 후 요지변경된

것으로 인정되는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보고 기술평가를 진행한다(구실용신안법 제15조제1항).

2001.7.1. 이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초적요건 심사단계에서 판단하여야 한다(실용신안법 제12조제2항제5호).

단, 기초적요건 심사단계에서 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 간과되어 설정등록된 후 기술평가 단계에서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이유를 통지한 후 정정에 의하여 신규사항 추가가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 취소결정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신규사항추가가 미치는 범위에 관계없이 모든 청구항이 취소된다.

■ 기술평가 진행 중 실용신안권이 포기된 경우의 처리

- 실용신안권자에 의해 실용신안권의 포기서가 제출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기술평가의 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술평가절차와 같이 기술평가 및 확정등록 절차 등을 진행한다.

■ 기술평가 도중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을 발견한 경우의 기술평가 처리절차(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 선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될 때까지 기술평가결정을 연기 또는 보류한다.

■ 등록공고 전의 등록실용신안이 공지된 고안인지 여부

- 실용신안법 제82조에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출원중인 경우에는 특허청 직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등록이 되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소멸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실용신안등록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설정등록되면 공지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원 99허1027 판결>

구 의장법(1995. 1. 5. 법률 제4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래에서 의장의 설명과 도면에 나타난 고안이 언제 국내에서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은 "의장등록출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의장등록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의장의 설정등록이 되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없는 이상 의장이 등록된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장에 관한 서류와 내용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구 의장법 제86조에 의하면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의장등록출원 중의 의장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의 등록이 되면 특허청 직원의 의장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소멸되므로 의장의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의장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의장의 등록일 이후에는 당해 의장의 내용은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후 94,100(병합)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의장공보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의장의 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의장서류에 관한 열람이나 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장의 물품 분류, 명칭, 출원인 등에 의한 검색을 통하여 등록의장의 번호나 내용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고 또한 그 정보에 근거하여 의장서류의 열람이나 복사의 신청이 가능하며, 나아가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의장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허법원 2003. 1. 9. 선고 2002허2372 판결>

(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7조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216조의 제1항은 "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

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등록공고 또는 출원 공개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에 관한 서류와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실용신안법 제82조는 특허청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의 고안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들을 종합하면, 타인의 실용신안 출원서류 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가 특허청장에 대하여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실용신안이 출원중인 때에는 실용신안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로 인하여 실용신안 출원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할 수 없지만, 실용신안이 등록된 이후에는 특허청 직원의 실용신안 내용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가 소멸되므로, 특허청장은 언제든지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등록된 실용신안의 출원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할 수 있고, 다만 등록공고가 되기 전이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그 출원서류의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용신안이 등록이 된 이후에는 비밀준수의무가 없는 제3자가 언제든지 명세서를 포함한 출원서류 일체를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실용신안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실용신안의 등록일 이후에는 비록 그 공고일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용신안의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등 참조).

■ 의견서제출에 관한 지정기간

- 실용신안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험 측정 등으로 별도의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가산하여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4조)
- 위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1월로 하며 1회에 한한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38조)

- 지정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정정청구서는 등록서비스팀에서 반려처리하며, 의견서의 경우에는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접수 후 심사에 참고한다.

■ 기술평가 대상이 없어진 경우의 처리

- 기술평가 진행중 기술평가 청구된 모든 청구항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정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기술평가 대상이 없어진 경우
 - 2001.02.03. 이후 출원의 경우에는 기술평가결정으로 각하처리(실용신안법 제28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42조) 및 확정등록의뢰하며 필요시 정정공고의뢰한다.
 - 2001.02.02. 이전 출원의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기술평가결정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확정등록의뢰하며 필요시 정정공고의뢰한다.
 - 기술평가결정서의 「결론」란에 “이건 기술평가청구는 기술평가의 대상이 취소(삭제)되어 더 이상 기술평가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하며, 정정의 인정으로 인하여 기술평가대상이 없어진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에 첨부된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또한 「이유」란에는 기술평가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한다.
- ※ 각하규정을 2001.2.2.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소급적용으로 인한 출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02.03. 이후 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

5. 정보제공제도와 기술평가

■ 관련규정

제35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⑥제3항의 등록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

- 정보제공은 등록공고 후에 가능하며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정보제공자료의 대출

- 정보제공시 증거로 제출된 자료 가운데 전자화된 자료는 심사관이 전산상으로 자료를 확인하여야하고, 전자화가 불가능한 자료는 출원서비스팀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출원서비스팀으로부터 동 자료를 대출 받아 평가과정에서 참고한 후 반납한다.
-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결된 경우,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사사무취급규정 제83조).

6. 기술평가와 이의신청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 이의신청서부분 송달 전 기술평가 청구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사장 명의로 이의신청인과 권리자에게 절차중지를 통지하고 기술평가를 앞당겨 착수한다(실용신안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8조제1항, 특·실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
- 이의신청된 청구항이 모두 기술평가에 의해 등록유지결정을 받는 경우에는 기술평가결정, 정정공고의뢰(필요시) 및 확정등록의뢰 후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 이의신청된 청구항이 모두 기술평가에 의해 취소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취소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 경과)된 후 확정등록의뢰하고 이의신청은 각하한다(실용신안법 제48조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42조).
- 이의신청된 청구항 중 일부는 기술평가에 의해 유지결정을 받고 일부는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된 청구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유지된 청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한다. 이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청구항은 유지결정된 청구항에 대한 이의결정시에 각하처리한다.

■ 이의신청서부분 송달 후 기술평가 청구된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중 기술평가 착수시기가 도래하였을 때 기술평가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중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어 그 처리를 중지한다(실용신안법 제28조).
- 이의결정에 의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필요시) 및 확정등록의뢰를 한 후 기술평가절차를 진행한다.
-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이 모두 이의결정에 의해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등록의뢰 후 기술평가청구를 각하한다(실용신안법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2조).
-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 중 일부는 이의결정에 의해 유지결정을 받고 일부는 취소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취소된 청구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유지된 청구항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이 경우, 취소결정이 확정된 청구항은 유지결정된 청구항에 대한 기술평가결정시에 각하처리한다.

■ 고려사항

- 위의 두 경우는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이의신청서부분 송달 전에 기술평가가 청구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이의신청서부분을 송달한 후에 기술평가가 청구된 경우에 이의신청에 대한 정정청구서 제출이전에 절차중지통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답변서 제출기간이내에 정정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기술평가와 이의신청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각각에 대하여 정정이 청구될 수 있고 따라서 하나의 출원이 두 개의 출원으로 분리되는 등 혼동이 발생할 뿐 아니라 특허넷시스템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한 절차를 종료한 후 다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과 기술평가의 유지결정의 효과 차이

- 실용신안권자는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 결정을 받으면 이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의결정에 의한 등록유지 결정만을 받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는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이후에만 할 수 있다.
 - 따라서,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7. 기술평가와 무효심판이 동시 계류중인 경우의 처리

- 기술평가와 무효심판이 동시에 계류중인 경우, 무효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28조).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사관은 가급적 기술평가절차를 무효심판에 앞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절 정정청구

1. 기술평가 과정에서 정정청구제도의 취지

- 기술평가 과정에서의 정정청구제도는, 기술평가 청구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등록취소이유가 통지된 경우에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정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등록취소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정정 후 유지결정된 청구항의 권리는 등록시로 소급하므로 정정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하며 정정의 인정요건을 위배하여 심사관이 정정을 인정한 경우 추후에 정정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

2. 관련규정

실용신안법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 ① 실용신안권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2.3]
 -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③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이 실용신안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술평가청구인에게 정정청구서의 부분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
- ⑤ 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1.2.3]

〈특허법〉

제77조(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제136조(정정심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중 제4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심판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가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및 제39조제1항·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⑧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정정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특허출원·출원공개·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⑨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139조(공동심판의 청구) ③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심판사건의 표시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36조제1항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기술평가 정정청구제도의 성격

- 고안이 등록되면 그 고안에 대하여 권리가 형성되고 일반 공중은 등록된 권리를 확정적인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
 - 따라서, 정정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로부터 비롯되는 실용신안권의 효력의 범위, 고안의 내용, 기술사상의 동일성이 변동되는 경우 공시된 실용신안권의 내용을 신뢰하고 있던 불특정의 제3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 정정으로 인해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에는 정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 실용신안권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되고, 기술평가과정에서 실체심사를 하는 성격이 있다 하여 기술평가과정에서의 정정을 심사과정에서의 보정과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 ※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에 관해 권리를 조기에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출원인의 책임(보다 완벽한 출원서의 작성, 출원전 선행기술조사)하에 등록을 시켜주는 제도이다.

- 따라서 출원 후 짧은 기간내에 등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이점이 있으나, 등록 이후 기술평가 과정에서의 정정은 권리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되므로 출원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제도이다.

※ 실용신안법상 정정과 보정의 비교

구 분	보 정	정 정 청 구
근 거 규 정	실용신안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9조	실용신안법 제27조
시 기	○ 출원일로부터 2월이내 - 회수 제한 없이 가능 ○ 실용신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요건 심사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 제출기간 내	○ 실용신안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등록취소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
범 위	○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내에서 청구항수의 증감, 청구범위의 확장·변경·감축가능	○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에 한함 - 이 경우에도 신규사항을 추가하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할 수 없음 -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인 경우에는 정정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시 등록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불인정	○ 보정에 의해 기초적요건 위배사항이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함	○ 정정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권리자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정정청구시기, 정정청구회수 등

- (1) 실용신안법 제27조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심사관의 기술평가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2개월)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정정청구의 제출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취소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이내이면 정정청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3) 실용신안권이 기술평가결과 취소결정된 경우에는 실용신안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불복심판 청구시 실용신안권을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 또한, 실용신안법 제51조제1항에는 기술평가·이의신청 또는 등록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기술평가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기술평가는 특허심판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술평가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시에 정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

5. 정정청구인, 정정청구대상, 정정청구서

5.1. 정정청구인

- (1) 정정청구인은 실용신안권자이다.
- (2) 실용신안권자는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9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00조제4항 및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동의를 얻은 후에만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36조제7항 :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 이 경우 이들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3) 실용신안권이 공유인 경우 권리의 공유자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특허법 제139조제3항 :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 ※ 위 (2), (3)의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특허청장 명의로 보정(실용신안법 제11조)을 명한 후 흠결이 보정되지 않을 경우 정정청구를 무효처분한다(실용신안법 제3조).

5.2. 정정청구대상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

5.3. 정정청구서

-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정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허법 제140조제1항 :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 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다. 사건의 표시(기술평가청구번호, 기술평가청구일자)
 - 라.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정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40조제5항 :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5.4. 정정청구서의 방식심사

- 정정청구서에 대한 방식심사는 등록서비스팀에서 담당한다(등록사무취급규정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12조).

6. 정정의 범위 및 정정청구의 취급

6.1. 기본원칙

- 실용신안권자가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동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되어 있다.
- 정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으로 인해 실용신안권의 범위가 변경되어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에 있어서 항의 번호를 변경하거나 항을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청구범위에 대한 정정인정여부는 같은 항번호를 갖는 각 청구항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는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 정정인정여부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정정을 잘못 판단하여 인정하게 되는 경우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또한 잘못 인정된 정정이 추후에 정정의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경우에는 권리자에게도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정에 있어서 항의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다만, 청구항의 번호를 변경하거나 청구항을 추가하는 것이 항의 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고 정정청구서의 취지 및 이유 등의 기재로 보아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다.
- 정정청구는 일사건일청구(一事件一請求)를 원칙으로 한다. 즉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이 설정등록시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여러 곳에 걸쳐서 정정을 한 것이 라도 이것은 일체불가분(一體不可分)의 1개의 정정사항으로 하여 정정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정정사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정정불인정사유가 있으면 그 정정청구는 불인정 된다.

6.2. 정정을 할 수 있는범위

6.2.1.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 청구범위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청구범위의 감축이라 함은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를 감축하는 것 또는 청구항의 삭제를 말하며 청구범위의 감축여부는 각 청구항별로 판단한다.
- 다만, 청구범위의 감축이 바로 정정의 인정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도 만족해야만 정정이 인정된다.

○ 청구범위 감축의 유형

- a. 청구항의 삭제
- b. 태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
- c. 상위개념의 기재로부터 하위개념의 기재로의 변경
- d.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 e. 다수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인용되는 항의 일부삭제
- f. 수치범위의 축소

a. 청구항의 삭제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란에 기재된 항을 삭제하는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정은 인정된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1. A 2. 1항에 있어서 B가 부가된 것	1. 삭제 2. A에 B가 부가된 것

※ 독립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이 있고 그 독립항에 등록취소사유가 있어 그 독립항을 삭제하고 종속항을 위와 같이 정정하는 경우, 제1항은 청구범위의 감축이며 제2항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위의 정정은 인정된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A에 B가 부가된 것”으로 정정하는 것은 정정된 제1항의 청구범위가 정정전 제2항의 청구범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정정인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고 제3자의 불측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으므로 인정된다.

b.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

- 다수의 구성요소가 택일적으로 기재된 경우 그 중 일부를 삭제하는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 상부판넬과 하부판넬을 볼트 또는 리벳 으로 결합시킨...	○ 상부판넬과 하부판넬을 볼트 로 결합시킨...

c. 상위개념의 기재로부터 하위개념의 기재로의 변경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필기구	만년필

※ 만년필, 연필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필기구를 하위개념인 만년필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된다. 다만 이러한 변경이 다른 정정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정정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d.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를 양자의 고압단자의 부상이 공통하게 되도록 결합시키고, 양자를 일체로 하여 동일 용기내에 수납한 입자가속기의 구조	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를 양자의 고압단자의 부상이 공통하게 되도록 결합시키고, 양자를 일체로 하여 동일 용기내에 수납하고, 또한 양 전원장치의 동전위를 결합시켜서 2개의 선으로 인출한 입자가속기의 구조

※ 양 전원장치(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의 동전위를 결합시키고, 2개의 선으로 인출하는 구성요소를 직렬적으로 부가하여, 양 전원장치 및 인출선의 관련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직렬적 부가는 대부분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므로 정정요건 검토시 주의하여야 한다.

e. 다수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인용되는 항의 일부삭제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제어장치	제1항 또는 제2항중 어느 한항에 있어서, ...을 특징으로 하는 온도 제어장치

※ 다수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에서 인용되는 항을 일부 삭제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f. 수치범위의 축소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 ...10° ~ 50°C의 온도에서	○ ...24° ~ 25°C의 온도에서

※ 수치범위의 축소는 청구범위의 감축이다. 그러나 수치범위의 축소라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또는 신규사항 추가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 잘못된 기재의 정정이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기재라는 것이 명세서 기재 전체로 보아 자명하거나,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으로 보아 명확한 경우에 그 잘못된 기재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정전의 명세서	정정후의 명세서
(고안의 명칭) :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상세한 설명) ----- 스프링 정수는 동일내압, 동일하중의 경우 피레리형 타이어가 17kg/mm인데, 본 발명의 타이어는 14.3kg/cm로 대단히 작고 ----- 캄버슬라이드에 상당한 차가 있으나 코오링포오스에 비하여 절대치가 작아 영향은 작다.	(고안의 명칭) : 차륜용 뉴매틱타이어 (상세한 설명) ----- 스프링 정수는 동일내압, 동일하중의 경우 피레리형 타이어가 17kg/mm인데, 본 발명의 타이어는 14.3kg/mm로 대단히 작고 ----- 캄버슬라이드에 상당한 차가 있으나 코오너링포오스에 비하여 절대치가 작아 영향은 작다.

※ kg/cm를 kg/mm로 정정하는 것은 종 스프링 정수의 단위가 kg/cm가 아니고 kg/mm라는 것이 당업자의 상식에 속하고, 명세서의 다른 곳에도 종스프링 정수의 단위가 kg/mm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코오링포오스를 코오너링포오스로 정정하는 것은 코오링포오스가 코오너링포오스 즉 “구심력”에 해당하는 단어라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곳에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란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 가운데 일부분이 문맥상으로 그 자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명세서 또는 도면의 다른 기재와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기재를 말한다. 따라서 명세서 또는 도면 자체의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와 기재내용 상호간의 불일치나 모순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경우 등이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은 신규사항을 추가하거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변경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요건 검토시 주의하여야 한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제1항 : A, B, C로 된 물건 제2항 : 1항에 있어서 A는 a1, a2 또는 a3중 하나로 된 물건	제1항 : 삭제 제2항 : a1, B, C로 된 물건 제3항 : a2, B, C로 된 물건 제4항 : a3, B, C로 된 물건

※ 제1항은 항을 삭제한 것으로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정정인정, 제2항은 택일적 구성요소 a2 및 a3를 삭제한 것으로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정정인정, 제3항 및 제4항은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항의 추가에 해당되므로 정정불인정. 따라서 상기 정정은 불인정된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3항 및 제4항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제2항을 “A, B, C로 된 물건에 있어서 A는 a1, a2 또는 a3중 하나로 된 물건”으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제1항 : A, B로 된 장치 제2항 : 1항에 있어서 C를 포함하는 장치 제3항 : 1항 또는 2항 있어서 D를 포함하는 장치	제1항 : 삭제 제2항 : A, B, C로 된 장치 제3항 : A, B, D로 된 장치 제4항 : A, B, C, D로 된 장치

※ 제1항은 항을 삭제한 것으로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정정인정,
제2항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정정인정, 제3항은 두 개의 고안에서 A, B, C, D로 된 장치라는 고안을 삭제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으로 정정인정, 제4항은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항의 추가에 해당되나, 항정리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임이 명백하므로 예외적으로 정정을 인정한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제4항을 추가하지 아니하고 제3항을 A, B, D 또는 A, B, C, D 로 된 장치로 정정하는 것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6.2.2.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이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

-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은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1.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 단,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특허법 제136조제2항)
 2.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특허법 제136조제3항)
 3. 정정이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후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등록유지될 수 있는 것(특허법 제136조제4항)

①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일 것

-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단,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 다만, 명세서 또는 도면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기재내용을 당업자의 시각에서 보아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요약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일부가 아니므로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 새로운 실시예를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된다.
- 고안을 완성시키는 정정은 고안의 미완성 상태에 무언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고안이 완성된 것이므로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다.
- 고안이 달성하는 효과, 이론, 실험데이터 등을 추가하는 것이 실용신안등록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가 아니면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에 해당한다.

②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닐 것

-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인정되면 정정된 내용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청구범위를 정정에 의해 사실상 변동시키게 되면 그 실용신안권의 보호범위가 변동되게 된다.
 -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정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란 청구범위에 기재된 당해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 특히 범위, 성질 등을 확장시키거나 변경시키는 것, 즉, 정정 전·후에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에는 ①청구범위의 기재자체를 정정함에 의해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와 ②청구범위를 전혀 정정하지 않더라도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의 기재를 정정함에 의해 간접적으로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가 있다.

- 청구범위는 고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된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되므로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청구항별로 판단한다.
-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하는 정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 a. 청구항에 기재된 직렬적 구성요소의 삭제
 - b. 청구항에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부가
 - c.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위개념으로 변경
 - d. 청구항의 추가 또는 실시예의 추가
 - e.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확장
 - f. 인용항의 추가
-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경우
 - g. 정정에 의하여 미완성 고안을 완성시키는 경우
 - h.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치환
 - i. 수치범위의 변경
 - j. 정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감축되더라도 정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안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기술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7.4 정정청구의 취급시 주의사항의 “정정에 의한 청구범위의 변경 여부 판단관련 유의사항”(구성요소의 외적부가 포함)참조]
 - k. 고안의 대상이 변경된 경우
 - l. 청구항에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 확장 또는 변경
 - m. 청구범위의 정정이 없더라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는 경우

a. 청구항에 기재된 직렬적 구성요소의 삭제

정정 전의 청구범위	정정 후의 청구범위
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를 양자의 고압단자의 부상이 공통하게 되도록 결합시키고, 양자를 일체로 하여 동일 용기내에 수납하고 , 또한 양전원장치의 동전위를 결합시켜서 2개의 선으로 인출한 입자가속기의 구조	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를 양자의 고압단자의 부상이 공통하게 되도록 결합시키고, 양자를 일체로 하여 동일 용기내에 수납한 입자가속기의 구조

※ 양 전원장치(가속전압의 전원장치와 이온원의 전원장치)의 동전위점을 결합시키고, 2개의 선으로 인출하는 구성을 구성요소에서 삭제하여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확장된 경우

b. 청구항에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부가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상부판넬과 하부판넬을 볼트 로 결합시킨...	상부판넬과 하부판넬을 볼트 또는 리벳 으로 결합시킨...

※ “볼트”를 “볼트 또는 리벳”으로 하는 것은 택일적 기재요소를 부가한 것으로서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정정에 해당

c.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상위개념으로 변경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만년필	필기구

※ 필기구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인 만년필을 만년필, 연필, 볼펜 등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인 필기구로 정정함에 의해 청구범위가 확장된 경우

d. 청구항의 추가 또는 실시예의 추가

청구항을 추가하는 것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해당된다. 새로운 실시예를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해석을 통하여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 청구항을 추가하는 정정을 한 경우에 있어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추가의 기술평가청구료 납부하여야 한다(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7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실용신안법 제11조제4호).

이는 현재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기술평가청구료 관련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정정에 의하여 청구항이 추가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특별히 규정할 필요도 없다.

e.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확장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탄소 3~4%를 포함하는…	…탄소 3~5%를 포함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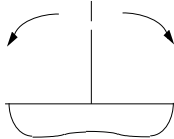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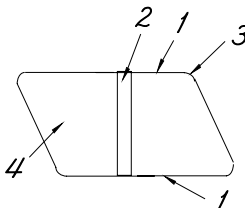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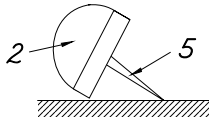
- ※ 수치범위의 확장으로 청구범위가 확장됨

f. 인용항의 추가

인용항을 추가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청구항1에 있어서	청구항1 또는 청구항2에 있어서

g. 미완성 고안을 정정에 의하여 완성시키는 경우

정 정 전	정 정 후
(청구범위) 자연상태에서 상시 침끝이 하향하도록 한 압정 주) 정정전의 명세서에는 침끝이 상향하지 않으므로 안전하다고 하는 효과의 기재가 있을 뿐이며 구성, 작용의 설명은 없고 도면은 약도로 운동방향이 화살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범위) 긴 직선모서리(1)(1)를 연결하는 상태로 한쪽에 반원형의 집는 곳(2)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각부(3)를 둥글게 한 마름모꼴 장방형의 두부(4)의 다른 쪽에 침(5)을 식설한 압정 주) 정정후의 명세서에는 자연상태로 침끝이 하향하는 점의 구성효과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도면도 정정되었다. 第 1 圖  第 2 圖 

※ 정정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는 고안의 효과만 기재되어 있고 구성, 작용의 설명이 없어 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기술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안이 완성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없었으나, 그 미완성부분에 대하여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그 기술적 이면을 분명히 해서 완성된 고안으로 하였으므로 이 정정은 무에서 유를 생기게 한 것과 같으며 기술적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정정에 해당된다.

h.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의 치환

정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D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X로 치환하여 청구범위가 변경된다면 그 정정은 인정될 수 없다.

정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 D를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균등물 X로 치환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정은 인정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도 해당되므로 정정은 불인정된다.

예)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A+B+C+D	A+B+C+X

i.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범위의 변경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10° ~ 20°C의 온도에서...	...10° ~ 20°F의 온도에서...

※ 수치범위의 변경으로 청구범위가 변경됨

j. 정정에 의하여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에도 정정 전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구성되는 고안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를 일탈하여 그 기술적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예1)

정 정 전	정 정 후
(고안의 명칭) 일안(一眼)레플렉스카메라 (청구범위) ... 집점에 대하여 45도의 각도로 1매의 반사경을 설치하고 그 반사경을 셔터를 누를 때에만 암상자내의 저판에 대략 평행하게 되도록 자동적으로 하강하도록 하고 또 셔터를 다 누르고 나면 상기 암상자내의 저판에 대략 평행하게 있는 반사경을 암상자내에 장치한 스프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복귀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안(一眼)레플렉스카메라 * 정정 전·후의 도면과 상세한 설명은 동일함	(고안의 명칭) 일안(一眼)레플렉스카메라 (청구범위) ... 집점에 대하여 45도의 각도로 1매의 반사경의 후단면과 계지하는 2차반사방지용 차광판을 그 기단에서 추착(樞着)시킴과 동시에 그 반사경을 ... 복귀되도록 하고 또한 반사경의 하강 상승에 관련하여 2차반사방지용차광판을 기복이 자재하게 회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안(一眼)레플렉스카메라

※ 이 정정은 노광시에 반사경에 의한 2차 반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으로서 반사경에 연동하여 반사경의 표면을 은폐하는 차광판의 기복기구를 부가한 것임. 한편, 본원고안의 정정 전 명세서로부터 파악되는 그 고안의 목적은 초창각렌즈 또는 대구경렌즈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촬영후에 있어서의 파인더상의 소실현상이 없는 일안레플렉스카메라를 얻는 점에 있는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이 정정은 명백하게 고안의 목적을 달리하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부가한 것이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인정됨

k. 고안의 대상이 변경된 경우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u>승용차의 형태로 신속하게 변형 시키는 장치로서</u> 승용차의 형태에 있어서 후부좌석의背部와 미부게이트사이에 수평으로 연장되어서 후부차실, 즉 이하 2개의 화물 넣는 곳으로 분할시키고 ----- 특징으로 하는 <u>장치</u>	구비한 자동차에 있어서, 상기 최후장의 좌석과 상기 미부게이트 사이에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연장되어서 상기 후부차실을 상하 2개의 실로 분할시키는 격벽부재를 ----- 특징으로 하는 <u>자동차</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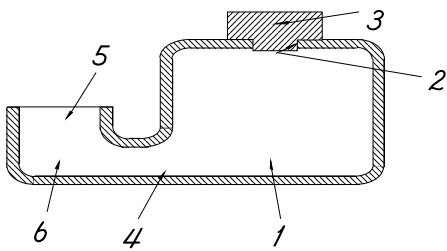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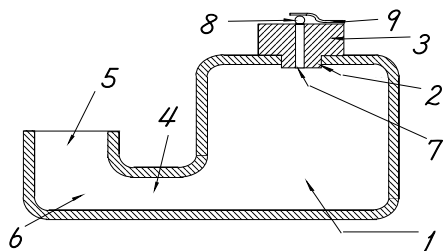
※ 정정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고안의 대상물은 승용차의 형태로 신속하게 변환시키는 장치인데 대하여, 정정된 청구범위의 대상물은 자동차로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변경한 것에 해당됨

1. 청구항에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제1항 : A, B로 된 물품	제1항 : A, B, C로 된 물품

※ 제1항에 구성요소 C를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였으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정이 불인정되며 이 경우 구성요소 C가 정정전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을 회피할 수 없다. 다만 정정전의 고안의 구체적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 m. 청구범위의 기재에 정정이 없더라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정정함으로써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사상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되는 경우

정 정 전	정 정 후
(청구범위) 잉크탱크(1)상면에 잉크주입용 개구(2)를 개 설하고 이 개구(3)에 뚜껑(3)을 덮고 잉크탱 크(1)의 하부한쪽에 잉크유통공(4)에 펜촉삽 입구(5)가 있는 잉크모이는 곳을 장치한 잉 크병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발췌) 잉크모이는 곳(6)의 잉크를 사용할 때에 사 용량에 맞는 양의 잉크가 늘 잉크모이는 곳 (6)에 자동적으로 보급되어 늘 일정량의 잉 크가 펜촉에 부착된다. 	(청구범위) 좌 동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발췌) 좌 동 뚜껑(3)에 관통공(7)을 만들고 이 관통공 (7)의 상면을 막는 원형의 변을 공후단을 뚜껑(3)에 장착한 용수철(9)의 자유단으로 누르도록 구성하면 잉크모이는 곳(6)에 잉크보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원 형의 변(8)을 올려 잉크탱크(1)의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에 의하여 잉크의 미량 보급이 가능하다. 

※ 상세한 설명에서 정정 전의 것은 단순한 뚜껑이 있는 것이었는데 대하여 정정된 것은 뚜껑에 원형의 변을 만들어 잉크탱크의 내부의 압력을 미량조절 한다는 것으로서 원형의 변을 부착한 뚜껑이 이미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어 상세한 설명의 정정이 일견 정정 전의 청구범위에 영향이 없는 정정으로 보이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을 뒷받침하는 부분에 대하여 뚜껑에 관계되는 실

시에를 보충하는 정정이고 더욱이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가 없고 또 기재에서 보아도 자명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 정정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사항이 실질적으로 확장 또는 변경된 것으로 인정됨

■ 참고판례

<특허법원 1999. 7. 1. 선고 98허9840 판결>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정정하되 하위개념의 발명이 선택발명이 되어 특허성을 가지게 되고 또 그 하위개념의 발명이 특허명세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상위개념의 발명을 명세서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발명으로 감축하여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어야 할 것이고 . . .

< 대법원 2002후413 >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정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그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떤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없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만을 그 비교대상으로 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특허법 제6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③ 정정이 청구범위를 감축한 경우 또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 후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

-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한 청구항이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등록유지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정정은 실용신안법 제2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위반되므로 정정을 불인정한다.

- 본 규정의 적용은 정정을 한 청구항 만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삭제한 청구항은 등록취소할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삭제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실용신안법 제27조와 특허법 제 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 136조제4항은 살필 필요가 없음).
- 기초적 요건심사에서의 실용신안등록요건인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법 제9조제5항) 및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법 제10조)는 실용신안권의 실질적 내용과 무관하고 무효사유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의한 정정불인정이유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정정불인정 이유
 - a.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5조
 - b. 제5조(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및 제7조(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 c.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 d. 제9조제3항 제4항
 - e.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자) 및 동법 제44조(공동출원)
 - f. 조약에 위반된 경우
 - g. 실용신안등록 된 후 그 실용신안권자가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반된 경우
 - h.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 i.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 참고판례

〈대법원 1989.2.28.선고, 87후63 판결; 同旨 특허법원 1998.9.17.선고, 98허2214 판결참조〉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제1항은 특허권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설정등록

된 후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특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은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든가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1986.1.21.선고85후67판결 참조〉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바 없었던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함으로써 정정 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서는 실시 불가능하였던 고안이 비로소 실시 가능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여 그와 같은 정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종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신규의 기술방법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래의 공지된 기술방법을 기재함에 불과하고 등록고안도 이와 같은 기술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는 불완전한 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 청구의범위를 확장 변경하는 요지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7. 정정청구에 대한 판단

7.1.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 심사관은 정정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정정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

하여 심사한 후

- 그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기술평가결정을 하고,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술평가결정서의 결론 및 이유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 2001.6.30. 이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구 특허법 제136조제2항(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 불가) 및 제3항(출원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을 적용 받음. 따라서 현 특허법 제136조제2항의 적용은 제외된다.

※ 기술평가과정에서의 정정의 인정요건의 신·구법 비교

■ 2001.7.1. 이후 출원에 대한 정정의 인정요건

정정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실§27②)	신규사항 추가금지 (특§136②)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특§136③)	출원시 등록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특§136④)
청구범위의 감축	○	○	○
잘못된 기재의 정정	○	○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	○	×

■ 2001.6.30. 이전 출원에 대한 정정의 인정요건

정정청구할 수 있는 경우 (실§27②)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변경 금지 (특§136②)	출원시 등록유지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특§136③)
청구범위의 감축	○	○
잘못된 기재의 정정	○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	○	×

※ 정정의 인정요건 관련 구실용신안법 규정

o 구실용신안법 제27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3. 불명료한 기재를 설명하는 경우

○ 구 특허법 제136조

- ②제1항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2.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는 경우

- 심사관은 정정청구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거나 설사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2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실용신안권자는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정정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9항).
- 제출된 의견서와 보정서에 의하여도 정정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기술평가결정서의 이유란에 정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하고 정정청구를 불인정한다.
- ※ 제출된 보정서를 인정 또는 불인정한 후 정정명세서를 불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초의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이유로 정정명세서를 불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정정불인정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발견된 모든 이유에 대하여 불인정이유통지를 하여야 하며, 특히 취소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7.3.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의 기재 예

예1) 실용신안법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의 기재 예

(기술평가 경위)

- 선등록된 권리에 대한 기술평가 청구
- 심사관은 기술평가에서 선등록된 권리는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함
- 권리자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인용고안)를 극복하고자 청구범위에서 구성요소를 외적으로 부가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관은 이를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권리자에게 정정청구불인정이유통지를 함

(정정불인정이유통지 예시)

이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을 살펴보면 정정 전의 실용신안등록청구의 범위는 분쇄통과 본체의 착탈이었으나, 본체에 연결되어 구동되며 주위에 나선형 절삭날(7)이 형성되어 있는 스크류(8) 및 삼각형단면이라는 구성요소들이 정정에 의해 새롭게 추가되는 것에 의하여 피착즙물의 절단과 이송이라는 목적 및 작용효과를 새롭게 갖게되어 고안의 기술적 사상과 대상물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정정청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정전의 청구범위	정정후의 청구범위
본체(1) 일측에 결합링(2)을 유착하고 내부에 등간격으로 삼각형 세절날(4)(4')이 다수개 형성된 분쇄통(5)의 일측단 만곡돌부(6)를 결합링(2)에 끼워 고정하여서 된 분쇄기	결합링(2)이 유착된 본체(1), 본체(1)에 연결되어 구동되며 주위에 나선형의 절삭날(7)이 형성되어 있는 스크류(8) 및 내부에 상기 절삭날(7)과 밀착 교차되며 피착즙물을 순차적으로 미세하게 절단하면서 이송시키기 위하여 등간격으로 다수개가 배치된 삼각형 단면의 세절날(4)(4') 및 상기 본체(1)의 결합링(2)에 결합하기 위한 만곡돌부(6)를 구비하는 분쇄통(5)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쇄기

예2) 실용신안법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의 기재 예

(기술평가경위)

- 선등록된 권리에 대한 기술평가 청구
- 심사관은 기술평가에서 선등록된 권리는 인용고안으로 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의견제출통지를 함
- 권리자는 심사관의 등록취소사유(인용고안)를 극복하고자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심사관은 정정청구에 의해서도 등록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하여 권리자에게 정정청구불인정이유통지를 함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예시)

이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정정이 실용신안법 제27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정정된 청구항과 인용고안(의견제출통지서에서 인용한 고안)을 대비해보면(대비)..... 정정된 청구항은 인용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의거 이건 정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7.4. 정정청구의 취급시 주의사항

(1)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적용

특허법 제136조제4항은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 실용신안권자가 한 정정청구가 청구범위의 감축 또는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하는 정정인 경우 그 정정청구가 심사관이 통지한 등록

취소이유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이는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해당되므로 정정불인정대상이 된다.

- 기술평가 과정에서 청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하여 권리자가 당해 특정 청구항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였으나, 감축된 청구범위에 의해서도 심사관이 통지한 등록취소이유를 해소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정정을 불인정해야 한다.

- 그러나, 기술평가 과정에서 특정 청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진보성결여를 이유로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해 권리자가 당해 청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히 하는 정정’만을 하였을 경우 특허법 제136조제4항을 적용하여 정정을 불인정할 수 없다.

(2) 정정에 의한 청구범위의 변경여부 판단 관련 유의사항(구성요소의 외적부가 포함)

- 심사관의 등록취소이유통지에 대하여 권리자는 이를 극복하고자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구성요소가 부가됨으로써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정청구의 인정여부 판단시 청구범위의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 청구범위에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 정정 전후의 고안의 구체적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면 정정 전과 정정 후에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에 차이가 발생하여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구성요소를 외적으로 부가하는 정정인 경우에는 부가되는 구성요소가 그 고안에 있어 별다른 기술적 의미를 추가하지 아니하는 자명한 구성이 아닌 한 대부분 정정전의 고안에 비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
- 따라서 구성요소를 외적으로 부가하는 정정은 정정 전후로 고안의 목적 및

효과가 달라지게 하여 사실상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정의 인정여부 판단시에 유의해야 한다.

(3)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후 새로운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

-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후 새로운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 최초의 등록취소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소이유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등록취소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최초의 취소이유로 취소할 수 없거나, 취소하기 어렵거나 또는 명백히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 2차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게된다.
- 1차 정정청구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새로이 발견된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며
- 1차 정정청구서에 불인정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명세서를 기초로 취소이유를 통지하고 그 말미에 1차 정정청구서에 대한 정정불인정이유도 간단히 언급하여 2차 정정청구서 제출시 취소이유를 해소함과 동시에 정정불인정이유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 2차 정정청구서가 제출되면 2차 정정청구서에 의하여 정정청구의 인정·불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2차 정정청구서에 의한다는 것은 1차 정정청구서에 2차 정정청구서가 업데이트된 정정청구서 최종판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정명세서 최종판>

정정대상항목	등록명세서	제1차 정정	1차정정명세서	제2차 정정	2차정정명세서
상세한설명	◇	◆	◆		◆
제1항	○	◎	◎	●	●
제2항	△		△	삭제	삭제
.					
제10항	☆		☆		☆
도1	♠	♠	♠	♠	♠
도2	♡	♡	♡	삭제	삭제

- 2차 정정청구서의 정정이 인정되면(1차 정정청구서는 판단하지 아니함) 정정을 인정하고 기술평가결정한다.
- (2차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보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한 후) 2차 정정청구서를 재검토하여 2차 정정청구서에 불인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차 정정에 대하여 불인정이유통지를 하고, 1차 정정청구서를 검토하여 불인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정정에 대하여도 불인정이유통지를 한다. 이 경우, 2차 정정에 대한 불인정이유통지서에는 정정청구서 최종판에 대한 불인정이유를 기재하며 1차 정정에 대한 불인정이유통지서에는 1차 정정에 대한 불인정이유만을 기재한다.

아래도표에 있어서, 1차 정정의 경우 상세한 설명(◆) 및 도1(♠)에 불인정이유가 존재하고 2차 정정에서는 제1항(●)에 불인정이유가 있는 경우에, 2차 정정에 대한 불인정이유통지서에는 상세한 설명(◆) 및 제1항(●)에 대한 불인정이유를 기재하며 1차 정정에 대한 불인정이유통지서에는 상세한 설명(◆) 및 도1(♠)에 대한 불인정이유를 기재한다.

정정대상항목	등록 명세서	제1차 정정	1차정정 명세서	제2차 정정	2차정정 명세서
상세한설명	◇	◆	◆		◆
제1항	○	◎	◎	●	●
도1	♠	♠	♠	♠	♠

- 위의 1차 및 2차 정정불인정이유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은 2차 정정에 대한 보정서(2차 보정)에는 상세한 설명(◆) 및 제1항(●)에 대한 불인정이유를 극복하는 보정을 하고 1차 정정에 대한 보정서(1차 보정)에는 상세한 설명(◆) 및 도1(♠)에 대한 불인정이유를 극복하는 보정을 한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에 대한 보정은 1차 보정서 및 2차 보정서 모두에 기재하여야하며 도1(♠)에 대한 보정은 1차 보정서에만 기재한다.
- 1차 및 2차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관은 먼저 각 보정서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보정의 인정여부를 결정(정정의 보정

참조)하여 1차 및 2차 정정청구서를 확정 한 후 2차 정정청구서(정정청구서 최종판)에 의하여 정정의 인정여부를 확인한다. 정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 후 기술평가결정을 진행하며 2차 정정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인정한 후 1차 정정청구에 대하여 정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2차 보정서가 완벽하여 2차 보정이 인정되고 2차정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보정이나 1차 정정은 의미가 없게 되나 2차 정정이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보정 및 1차 정정이 의미를 갖게 된다.

- 2차 정정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1차 정정청구서의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 정정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인정 후 등록취소이유(1차 및 2차)와 1차 정명세서를 비교 검토하여 기술평가결정을 진행한다.
 - 정정을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를 발송한후 이후 절차를 진행한다.
- 이 경우 기술평가결정서의 이유 란에 그 과정 및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4)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내에 2회의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 “(3)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후 새로운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의 처리”에 있어서 2차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이후의 처리와 동일

(5) 등록취소이유에 대하여 청구항을 자진 삭제한 경우의 처리

- 심사관이 통지한 등록취소이유에 대응하여 권리자가 정정청구를 하면서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 중의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였을 경우 이는 기술평가결정을 할 대상이 없어진 것에 해당된다.
 - 따라서, 삭제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평가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기술평가결정을 한다.

예) 설정등록된 청구항이 4항이고 청구항 전체에 대해 기술평가청구한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해 【청구항1】에 대해서만 법 제25조에 따른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권리자는 【청구항1】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한 경우의 기술평가결정방식은?

기술평가청구	의견제출통지	정정청구
청구항 1	청구항 1	청구항 1(삭제)
2		2
3		3
4		4

- 자진 삭제한 청구항은 기술평가결정대상이 아니므로 청구항1은 기술평가결정(등록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고, 남아있는 청구항2, 3, 4에 대해서만 등록유지결정을 한다.
- 따라서 이 경우는 “기술평가사항 및 이력란”의 “결정구분 란”에서 유지버튼(심사파트장까지 보고)을 선택하여야 하며(일부유지버튼을 선택하면 심사팀장까지 보고 하게됨), 청구항1에 대해서는 확정등록의뢰시 확정등록의뢰서의 결정의 요지란 말미에 “청구항1은 자진 삭제”라고 기재한다.

(6) 의견서 제출 지정기간 내에 정정청구서가 제출되고 지정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정정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의 처리

-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정정청구서는 반려처리하고 적법하게 제출된 기 제출 정정청구서를 대상으로 정정의 인정여부를 검토한다.

▶ 기술평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의 정정에 대한 처리

(2001.6.30일 이전 출원건에만 해당)

- 정정청구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까지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술평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에 대한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도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술평가결정은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한다.

- 만약 기술평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의 정정이 불인정되면 그 정정청구는 불인정된다.

※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기술평가 청구되지 않은 청구항의 정정이 불인정되므로 인해 전체 정정청구가 불인정되어 기술평가 청구된 청구항이 등록취소가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5. 기술평가사례

예1) 심사관의 선행기술의 존재 및 기재불비를 등록취소이유로 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권리자가 청구범위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정정(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제3호)’을 청구한 경우

○ 이 경우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화)과 특허법 제136조제2항(신규사항 추가금지) 및 특허법 제136조제3항(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잘못된 기재의 정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정정후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출원당시 특허 받을 수 있는 것)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과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정정청구를 인정한 후 등록유지 또는 등록취소 결정을 한다.

※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모든 항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 결정서의 “결정의 결론” 란에는 정정청구의 인정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결정의 이유” 란에만 정정청구의 인정 경위 및 사실을 기재한다. 등록을 취소하면서 정정을 인정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정등록의뢰시 정정청구의 사실을 기재할 필요도 없고 정정공고를 의뢰할 필요도 없다. 다만, 권리자가 심사관의 등록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원에 취소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동 건이 취소환송되고 이 건에 대해 심사관이 등록유지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기 정정청구의 인정사실을 기술평가결정서의 결정의 결론 란에 기재하고 정정공고의뢰 및 확정등록의뢰를 한다.

예2) 설정등록된 청구항(1~3항) 전체에 대해 기술평가가 청구된 건으로서, 심사관의 진보성 없음(1항) 및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를 등록취소이유로 한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하여 권리자가 청구범위는 감축하지 않으면서 상세한 설명상의 ‘잘 못된 기재’를 정정(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제2호)한 경우

- 이 경우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특허법 제136조제2항 및 특허법 제136조제3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정정을 한 청구항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정정을 인정한 후 기술평가결정에 의하여 제1항은 취소결정, 제2항 및 제3항은 유지결정을 한 후 정정공고의뢰 및 확정등록의뢰를 한다.

※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정을 한 청구항이 등록유지될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에 의하여 정정을 불인정한 후 기술평가결정하여야한다.

1항을 취소할 수 있는 인용참증에 의하여 취소이유를 통지한 후 정정한 경우

항별 정정사항	정정인정 여부
제1항 (오기정정) 제2항 제3항	특허법136조제4항에 의하여 정정불인정한 후 제1항 취소, 제2, 3항 유지결정
제1항 제2항 (오기정정) 제3항	정정인정 후 제1항 취소, 제2, 3항 유지결정
제1항 (삭제) 제2항 (불명료의 명확) 제3항 (불명료의 명확)	정정인정 후 제2, 3항 유지결정(삭제한 제1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36조제4항을 적용하지 않음)

예3) 심사관이 기재불비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의 세 곳을 지적하여 의견제출통지서에 의해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였으나 권리자는 지적된 세 곳 중 두 곳에 대해서는 정정을 하고 나머지 한 곳은 전혀 정정을 하지 않은 정정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이 경우 정정하지 않은 한 곳은 현행법상 정정인정 여부의 판단대상으로 할 수 없으며, 정정한 두 곳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정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되 두 곳 모두의 정정이 상기조항에 따른 적법한 정정이라 인정되면 정정청구를 인정하고, 두 곳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조항에 따른 적법한 정정이라 인정되지 않으면 정정청구를 불인정한다.

- 정정청구를 인정한 경우 기술평가결정단계에서는 등록취소이유를 재검토하여 정정청구서에 의해서도 등록취소이유 세 곳 중의 어느 하나라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인정되면 극복하지 못한 부분과 연관된 청구항을 등록취소결정한다

예4) 심사관이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를 이유로 등록취소이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권리자가 기재불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불인정된 경우의 처리방법

- 심사관의 취소이유에 대응하여 제출된 정정청구가 불인정될 경우에는 등록당시 명세서 및 도면을 기초로 하여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 재검토 결과 여전히 ‘상세한 설명’에 기재불비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세한 설명’과 연관된 청구항을 등록취소결정한다.

※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항 전체를 취소결정해서는 안됨을 유의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다는 것은 실용신안법 제9조제3항의 요건(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고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명세서에 기재된 각각의 청구항은 각각의 고안을 나타내며, 기술평가 결정은 청구항 단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취소결정을 할 때는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청구항만을 취소결정해야 한다.

8.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

8.1. 제도의 도입

- 개정 실용신안법 시행 전에는 실용신안권자가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의견서만을 제출할 수 있었을 뿐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실용신안권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 실용신안법에서는 기술평가 과정에서 실용신안권자가 정정불인정이유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2. 관련규정

실용신안법제27조(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④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하여 준용한다.[개정 2001.2.3]

〈특허법〉

제77조(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제136조(정정심판)⑨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규정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판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3.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청구의 이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 적용시점

- 2001.7.1. 이후에 기술평가착수되었거나 이전에 착수되었다 하더라도 정정불인정 이유통지서가 7.1.이후에 발송된 건에 대해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를 적용한다.
 - 근거 규정: 실용신안법 부칙 ③-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이의신청의 심사단계에서는 2001.7.1. 이후에 이의신청된 건에 대해 정정청구에 대한 보정제도를 적용한다.
 - 근거 규정 : 실용신안법 부칙 ③-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 정정의 인정요건에 대한 신법규정(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은 2001.7.1. 이후 출원건에 대해 적용한다.
 - 부칙 ③-1, ③-4의 단서규정은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제도의 적용시점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정정의 인정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 따라서, 구 실용신안법하에 출원되어 등록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 또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정정의 보정 기회가 부여되어 보정이 인정될 경우 보정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과 동조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136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다.

8.4.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의 범위

(1) 일반적 기준

- 정정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하나인 청구취지는 보통 “실용신안등록 제○○○호 고안의 명세서(도면)를 청구서에 첨부한 명세서(도면)와 같이 정정할 것을 구한다.”라고 기재된다.
- 따라서, 정정청구서에 첨부되는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정정청구의 취지를 구성한다.
- ※ 정정청구의 취지는 정정청구서에 기재되는 청구취지와 정정청구서에 첨부되는 정정명세서(또는 도면)를 함께 고려하여 파악해야 함

예)

등록명세서의 청구범위	정정명세서의 청구범위	정정청구의 취지
A+B	A+B+b	등록명세서의 청구범위 A+B를 A+B+b로 정정한다.

- 한편,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에 의하면 정정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 따라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은 이 보정에 의해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 즉, ‘요지변경’ 여부의 판단대상은 ‘정정청구의 취지’이므로 정정명세서(또는 도면)의 보정에 의해 ‘정정청구의 취지’의 요지가 변경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보정된 정정명세서(또는 도면)와 보정전 정정명세서(또는 도면)를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청구취지의 요지가 변경된다는 것은 정정청구의 취지를 구성하는 정정사항의 동일성이나 범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의 정정사항 이외에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하거나 당초의 정정사항을 보정하더라도 보정에 의해 당초의 정정청구에 비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제도의 취지는 전체 정정사항 중 일부가 불인정될 경우에 불인정된 부분만을 삭제하거나 정정을 하면서 발생한 명백한 오탈자 등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정정청구서가 불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등록당시 명세서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출원당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권리자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정정명세서의 청구범위를 더욱 감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보정은 선행기술을 검색해야 하는 등 추가적으로 심리를 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로 본다.

(2) 청구취지 변경의 유형(특허청 심판편람 54.03 정정의 가부결정의 판단 및 사례. 7. 청구취지의 변경. 다. 청구취지 변경에 관한 유형의 본문중 발제) 및 판단기준

○ 추가적 변경

정정사항과 별개인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 보정은 불인정된다.

- 정정청구하지 아니한 구성요소의 삭제는 새로이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정정청구하지 아니한 청구항의 삭제는 새로이 정정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감축적 변경(정정사항을 철회하여 원래로 복귀하는 보정)

정정사항을 철회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정은 인정된다.

- 정정사항을 철회하여 등록명세서의 내용으로 복귀하는 것은 감축적 변경으로 보정은 인정된다.
- 정정에서 삭제한 청구항을 등록명세서대로 복귀하는 것은 감축적 변경으로 보정은 인정된다.
- 정정사항이 A(청구범위의 감축) 및 B(오기의 정정)이었던 것을 A 또는 B만으로 하는 보정은 감축적 변경으로 인정된다.

○ 교환적 변경

종래의 정정사항을 새로운 정정사항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정정청구의 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보정은 불인정된다. 다만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항의 정정된 구성요소를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변경하거나, 정정된 수치범위를 더욱 축소하거나,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수의 구성요소로 정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 중 일부를 삭제하는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정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교환적 변경이나 청구취지의 요지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정은 인정된다.

※ 예

구분	청구범위	보정인정 여부
등록명세서	A+B+(C 또는 D)	-
정정명세서	A+B+C	-
보정명세서(예1)	A+B+D	불인정
보정명세서(예2)	A+B+C'(C'는C의 하위개념)	인정 *

구분	청구범위	보정인정 여부
등록명세서	A성분의 함유량 10~90%	-
정정명세서	A성분의 함유량 60~80%	-
보정명세서(예1)	A성분의 함유량 20~40%	불인정
보정명세서(예2)	A성분의 함유량 65~75%	인정 *

- *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변경하거나 수치범위를 더욱 축소하는 경우 보정은 인정된다. 다만 변경이나 축소로 인하여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보정은 불인정된다.

(3) 판단사례

1. 등록명세서 및 정정명세서

구분	청구범위의 기재내용
등록명세서	칫솔모(A)가 식모되고 항균물질로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정정명세서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가 식모되고 항균물질로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2. 보정명세서

사례	보정명세서
1	칫솔모(A)가 식모되고 항균물질로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감축적 변경 인정
2	삭 제 청구항 삭제 교환적 변경 인정
3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가 식모되고 항균물질로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끼움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추가적 변경 불인정
4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가 식모된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삭제) … C … 추가적 변경 불인정
5	육각형 단면의(A'') 칫솔모가 식모되고 항균물질로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교환적 변경 인정*
6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가 식모되고 은이 코팅된(B') 브러시부와 일단이 브러시부와 나사결합되며(C) 타단에 걸이용 홈이 형성된 손잡이부로 구성된 분리형 칫솔 … A' … B' … C … 추가적 변경 불인정

3. 보정의 인정여부

- 상기의 정정사례는 등록명세서에 기재된 “칫솔모”(A기재)를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기재)로 정정한 경우이다.
- 사례1은 등록명세서에 기재된 “칫솔모”(A기재)로부터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기재)로의 정정사항을 삭제하여 등록명세서의 기재대로 복귀하는 것으로 감축적 변경으로 인정된다.
- 사례2는 정정청구된 청구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교환적 변경으로 인정된다.
- 사례3은 정정청구되지 아니한 “나사결합되며”(C기재)를 “끼움결합되며”(C'기재)로 대체하는 추가적 변경으로 불인정된다.
- 사례4는 정정청구되지 아니한 “평균물질로 코팅된”(B기재)을 삭제하는 보정으로 정정명세서의 보정에 의해 새로운 정정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추가적 변경으로 불인정 된다.
- 사례5는 정정된 “다각형 단면의 칫솔모”(A'기재)를 그 하위개념인 “육각형 단면의 칫솔모”(A''기재)로 변경한 것으로 교환적 변경이긴 하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인정된다.
- 사례6은 정정되지 않았던 “평균물질을 코팅한”(B기재)을 하위개념인 “은을 코팅한”(B'기재)로 보정하여 새로운 정정사항을 추가한 추가적 변경으로 불인정 된다.

(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 판단사례 및 유의사항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을 판단할 때 정정청구의 인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이며, 정정청구의 인정요건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과 동법 동조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추가적 변경이나 교환적변경(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을 허용하게 되면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를 정정청구를 한번 더 하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이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다.

-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의해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는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에 대한 인정여부와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 따라서, 보정이 인정되더라도 보정이 포함된 정정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그 정정은 불인정된다. 예컨대 정정된 모든 개소를 등록명세서대로 보정한 경우 그 보정은 감축적 보정으로 인정되나 보정이 포함된 정정명세서는 등록명세서와 동일하여 정정사항이 전혀없는 정정청구서가 되므로 그 정정은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명확화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정은 불인정된다.

(5)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 제출된 보정서가 정정청구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보정내용을 반영한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하여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를 재검토한다.
- 제출된 보정서가 정정청구의 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불인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평가 결정의 이유에 보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한다.
- 이 경우는, 보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의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하여 정정청구의 인정여부를 재검토한다.

※ 기술평가과정에서 ‘정정청구서’ 및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처리절차

- (1) 접수된 정정청구서가 정정의 인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심사화면에서 ‘인정’ 버튼을 눌러 정정을 인정한다.
- (2) 정정청구서가 정정의 인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1단계] 정정불인정이유를 통지한다.
 - 심사화면에서 ‘불인정’ 버튼을 누르고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를 작성한다.
 - 이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자는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정정명세서 등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2단계]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이에 대한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 또는 ‘불인정’ 버튼을 누른다. 이 때 ‘정정청구서’에 대한 인정/불인정 버튼이 재생성된다

[3단계] ‘정정청구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된 경우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정정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 ‘정정명세서등보정서’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보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당초의 정정청구서를 기초로 정정의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경우(정정청구서에 대하여 ‘불인정’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하지 않으며

-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경우(정정청구서에 대하여 ‘인정’버튼을 누른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한다. 다만, 기술평가청구된 청구항이 모두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하지 않는다.

※ ‘정정청구서’와 ‘정정명세서등보정서’의 인정여부에 따른 명세서최종판 반영 여부

인정/불인정 여부		최종판반영 여부	
정정청구서	정정명세서등보정서	정정청구서	정정명세서등보정서
인정	인정	○	○
인정	불인정	○	×
불인정	인정	×	×
불인정	불인정	×	×

9. 정정의 효과

- 정정청구가 인정되고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결정 및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8항)

10.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공고 및 정정공고 의뢰방법

-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이 인정되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관은 기술평가결정과 동시에 정보관리팀장에게 정정공고를 의뢰해야 한다.
- 확정등록의뢰를 당해 건의 종결처리로 보아 확정등록의뢰 이후에는 정정공고의뢰를 할 수 없으므로 정정공고의뢰는 반드시 확정등록의뢰 이전에 해야 한다.

제6절 기술평가결정서의 작성

1. 기술평가결정서 작성시 유의할 점

- (1) 기술평가결정은 등록 이후의 절차로서 기술평가결정의 경위와 구체적 이유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이전의 정정불인정이유통지와 동일한 이유로 정정을 불인정하고자 하거나 이전의 취소이유통지와 동일한 이유로 등록취소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와 같이 간단히 기재할 수 있다.

(예1 : 정정불인정)

정정청구는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권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예2 : 등록취소)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은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통지서에 첨부된 인용참증에 의하여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용신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도 기재)

- (2) 심사관이 청구항 전부를 유지결정할 것인지, 일부를 유지결정할 것인지, 전부를 취소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기술평가사항 및 이력란”의 “결정구분 란”에서 유지, 일부유지, 취소버튼중의 하나를 선택하면 전산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력란의 정보를 파악하여 필요한 기술평가결정서 작성양식을 지원해 준다.

- (3) 권리자가 정정청구를 하면서 일부 청구항을 자진 삭제하였으며 그 정정이 인정된 경우, 자진 삭제된 청구항에 대해서는 기술평가결정을 할 대상이 없어진 것에 해당되므로 등록취소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 따라서 자진 삭제된 청구항은 기술평가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만 기술평가결정을 한다.
 - 자진 삭제되고 남아 있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여 남아 있는 청구항의 전부를 등록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평가사항 및 이력란의 결정구분란에서 유지버튼을(심사파트장 보고), 남아 있는 청구항의 전부를 등록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버튼을(심사팀장 보고), 남아 있는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은 등록유지하고 일부 청구항은 등록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유지버튼을(심사팀장 보고) 선택한다.
- (4) 외국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하면서 실용신안등록출원한 경우에 있어서, 기초적 요건심사시 우선권주장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기재사항만으로 판단한 후 미제출 및 적합을 클릭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착수시 우선권주장인정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한다.
- 기술평가착수시에도 우선권주장서류의 제출기간 이내이고 우선권주장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중지통지를 한 후 제출기간이 경과한 다음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술평가를 진행한다.
- (5) 정정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결정의 결론 및 이유에 각각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정정청구를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는 결론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정정청구의 불인정이유만 결정의 이유에 기재한다.
- (6) 전산으로 기술평가결정서의 문형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 (7) 전산 지원 문형은 심사관의 기술평가결정서 작성을 돕고자 마련된 것이므로 문형내의 모든 문안은 심사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 특히, 정정청구서 또는 의견서가 2회 이상 제출된 경우 적절한 문서가 인용되었는지 검토하여야하며, 꺾쇠 괄호 “< >”부분은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2. 기술평가결정서 문형

□ 유지결정

- 의견제출통지 무 문형1
- 의견제출통지 유 ▪ 정정청구서 무 ▪ 의견서 무 문형2
 - 의견서 유 문형3
- 정정청구서 유 ▪ 인정 문형4
 - 불인정 ▪ 의견서 무 문형5
 - 의견서 유 문형6
- 보정서 유 . . . ▪ 정정인정, 보정인정 문형7
 - 정정인정, 보정불인정 문형7-1
 - 정정불인정, 보정인정 문형7-2
 - 정정불인정, 보정불인정 문형7-3

□ 일부유지, 일부취소 결정

- 정정청구서 무 ▪ 의견서 무 문형8
 - 의견서 유 문형9
- 정정청구서 유 ▪ 정정청구 인정 문형10
 - 정정청구 불인정 ▪ 의견서 무 문형11
 - 의견서 유 문형12
- 보정서 유 . . . ▪ 정정인정, 보정인정 문형13
 - 정정인정, 보정불인정 문형13-1
 - 정정불인정, 보정인정 문형13-2
 - 정정불인정, 보정불인정 문형13-3

□ 취소결정

- 정정청구서 무 ▪ 의견서 제출 무 문형14
 - 의견서 제출 유 문형15
- 정정청구서 유 ▪ 정정청구 인정 문형16
 - 정정청구 불인정 ▪ 의견서 제출 무 문형17
 - 의견서 제출 유 문형18
- 보정서 유 . . . ▪ 정정인정, 보정인정 문형19
 - 정정인정, 보정불인정 문형19-1
 - 정정불인정, 보정인정 문형19-2
 - 정정불인정, 보정불인정 문형19-3

(문형1)

등록유지결정

<의견제출통지 없음>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주소
대 리 인 성명
주소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주소
대 리 인 성명
주소
기술평가청구번호
기술평가청구일자
실용신안등록번호
고 안 의 명 칭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00 번호: 0000000 일자: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2)

등록유지결정

<의견제출통지에 대해 정정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없음>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2.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3)

등록유지결정

<의견제출통지에 대해 정정청구 없이 의견서만 제출>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4)

등록유지결정

<정정청구서 제출, 정정 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3.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5)

등록유지결정

<정정불인정이유통지, 의견서 무, 정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6)

등록유지결정

<정정불인정이유통지, 의견서제출, 정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간략히 기재>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7)

등록유지결정

<정정 인정, 보정 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가 반영된 0000.00.00.자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이에 따라, 보정 및 정정내용이 모두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7-1)

등록유지결정

<정정 인정, 보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이에 따라,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7-2)

등록유지결정

<정정 불인정, 보정 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정정내용을 간략히 기재>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7-3)

등록유지결정

<정정 불인정, 보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8)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정정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없음>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2.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3.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9)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정정청구 없이 의견서만 제출>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3.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0)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정정 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의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3.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1)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정정 불인정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미제출, 정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2)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정정불인정통지에 대해 의견서만 제출, 정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간략히 기재> 정정 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 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 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 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 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3)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 정정 인정, 보정 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가 반영된 0000.00.00.자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보정 및 정정내용이 모두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3-1)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 정정 인정, 보정 불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이에 따라,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3-2)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 정정불인정, 보정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정정내용을 간략히 기재>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3-3)

일부 등록유지, 일부 등록취소

< 정정불인정, 보정불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유지한다.
5.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특기사항]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0000.00.00.까지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날짜 이후 공개되는 선출원과 관련하여 실용신안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4)

등록취소결정

<정정청구서 및 의견서 제출 없음>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2.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5)

등록취소결정
<정정청구 없이 의견서만 제출>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하여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6)

등록취소결정

<정정 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3.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7)

등록취소결정

< 불인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미제출, 정정 불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2.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4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8)

등록취소결정

<정정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만 제출, 정정 불인정>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2. 의견서에 의해 재심사한 바,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을 간략히 기재>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9)

취소결정
< 정정인정, 보정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보정 및 정정내용이 모두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9-1)

취소결정
< 정정인정, 보정불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자진
삭제항 : 제0항).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재심사한 바,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및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한다.
4. 정정내용이 반영된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9-2)

취소결정
< 정정불인정, 보정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한다.
3. 보정내용이 반영된 정정내용은 <보정에 의해 변경된 정정내용을 간략히 기재>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문형19-3)

취소결정

< 정정불인정, 보정불인정 >

특 허 청
기술평가결정서

실용신안권자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인 성명 :

주소 :

대 리 인 성명 :

주소 :

기술평가청구번호 :

기술평가청구일자 :

실용신안등록번호 :

고 안 의 명 칭 :

이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우선권주장]

국가 : 00 번호 : 0000000 일자 : 0000.00.00.

[결론]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대한 절차경위는 다음과 같다.

0000.00.00. 기술평가 청구

0000.00.00. 등록취소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청구서 제출
 0000.00.00. 정정불인정이유 통지
 0000.00.00. 의견서 제출
 0000.00.00.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

2. 보정서의 보정내용은 <보정불인정이유 기재>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보정은 인정할 수 없다.
3. 정정청구서의 정정내용은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법 제2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아>, <실용신안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제 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건 정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등록실용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0항은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취소이유를 인용문헌, 적용 법조문,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 의견서에 대한 심사관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재> 실용신안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 끝.

특허청 심사○본부 ○○심사팀 심 사 관 ○○○

제7절 확정등록의뢰

1. 확정등록의 취지

- 확정등록이란 심사관 또는 심사관 합의체에 의한 결정, 심판청구에 의한 심결, 소제기에 의한 판결 등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종결된 경우 그 결정 등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확정 요지 등을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등록에 의하여 확정등록의 원인이 되는 예고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2. 관련규정

실용신안등록령

제1조의2(등록사항)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

제4조(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

3. 확정등록의뢰의 시기

(1) 등록유지 결정

-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전체를 등록유지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과에 확정등록의뢰를 해야 한다.

(2) 등록취소결정

-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전체를 등록취소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확정등록의뢰를 해야 한다.

- 결정이 확정된 때란 특허심판원에 불복 심판의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불복 심판청구기간(취소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이 도과한 때를 말한다.

(3) 일부등록유지·일부등록취소결정

- 등록실용신안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은 등록유지, 일부 청구항은 등록취소 한다는 기술평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된 청구항의 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후 즉시 등록유지 된 청구항과 등록취소 된 청구항을 함께 확정등록 의뢰를 한다.

4. 확정등록의뢰서 작성시 유의사항

- (1) 등록유지결정 후 즉시 확정등록의뢰를 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술평가결정 후에는 가능한 빨리 확정등록의뢰를 해야 한다.
- (2) 등록취소결정 후에 확정등록의뢰를 할 때는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등록취소결정인 경우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이 청구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확정등록의뢰를 하게되면 등록업무에 혼란이 생기고 권리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3) 확정등록의뢰서에 기재되는 확정일자는 등록료 반환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정확히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현재 확정일자는 전산에 의하여 자동 기재되나 우편 송달보고서의 분실 등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관이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송달일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로 확인한 후 입력한다.

* 접수번호확인(과내의 특수우편물수령증) → 등기번호확인(운영지원팀의 우편 송달업무담당자) → 송달일 확인(송달지 우체국)

※ 확정일자

- 유지·각하결정 : 결정서 발송일
 - 취소결정 : 불복심판청구기한 만료일의 익일(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확정일은 익일의 다음날)
- (예) 송달일 2003.4.1. → 확정일 2003.5.2.

(3) 기술평가청구에 의해 예고등록의뢰된 청구항의 수는 확정등록의뢰시 결정의 요지란에 기재된 청구항수(등록유지된 청구항, 등록취소된 청구항, 정정청구시 자진 삭제된 청구항)의 합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

- 정정에 의해 청구항의 일부가 권리자에 의해 자진 삭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삭제된 청구항을 “(자진 삭제항 : 제 항)”의 형태로 확정등록의뢰시 결정의 요지 말미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된 청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청구항이 삭제된 청구항인지 심사관의 오류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등록서비스팀에서 구별할 수 없다.

(4) 보정 또는 정정에 의해 최초출원시의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예고 및 확정등록을 의뢰하는 경우 최초출원시 청구항 번호를 그대로 기재한다.

- 심사관이 삭제된 청구항을 고려하여 일련번호에 따라 수정하여 표기하지 않는다.

예시)

최초출원시 청구항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으로 출원 되었으나 보정 또는 정정에 의해 청구항 제1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4항을 수정하여 → 제2항을 제1항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표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청구항을 출원시 부여된 청구항 번호 그대로 →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항 삭제)으로 표기한다.

- (5) 정정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제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의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 한다”라는 문형으로 정정청구에 관한 사항도 확정등록의뢰를 해야 한다.
 - 단,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권리 전체가 등록취소결정된 경우와 정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확정등록의뢰할 필요가 없다.
- (6) 확정등록이 완료된 후에 심사관의 의뢰가 잘못되어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등록경정의뢰서를 작성하여 등록서비스팀에 그 등록의 경정을 요청해야 한다.

5. 기술평가결정 형태별 확정등록의뢰 표준문안

(1) 권리 전체를 유지결정하는 경우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2) 청구항을 자진삭제하는 정정청구를 인정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 전체를 유지결정하는 경우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정정이전의 청구항 제0항은 정정에 의하여 자진 삭제되었음).

(3) 권리 전체를 취소 결정하는 경우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4) 청구항을 자진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인정한 후 정정 후의 청구항 전체를 취소 결정하는 경우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정정이전의 청구항 제0항은 정정에 의하여 자진 삭제되었음).

(5) 일부유지일부취소인 경우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중 제0항, 제0항의 등록을 취소한다.
- * 이 경우에도 삭제된 청구항이 있을 경우에는(4)의 경우처럼 끝에 “(정정이전의 청구항 제0항은 정정에 의해 자진 삭제되었음)”이라고 기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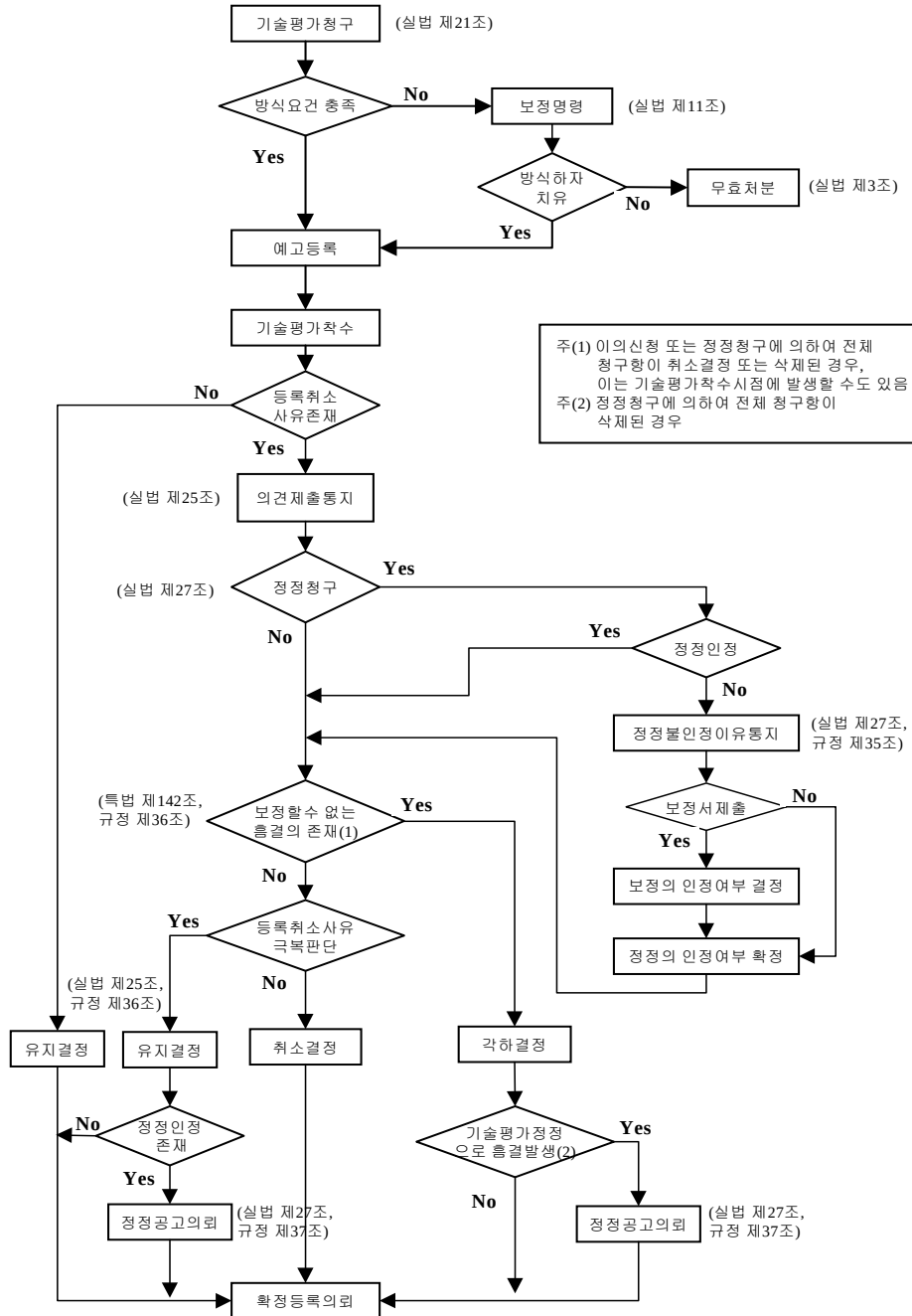
※ 각 유형 모두 정정청구를 인정할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 제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의 정정 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라는 문장을 앞에 추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정정청구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여 확정등록의뢰를 해야 한다.

- 그러나 전체 청구항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예시)

- 등록실용신안 제00000호의 명세서 및 도면을 0000.00.00자 정정청구서의 정정명세서 및 도면과 같이 정정한다.
- 등록실용신안 제0000000호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 제2항 및 제3항(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등록을 유지한다.

실용신안기술평가절차 흐름도



주(1) 이의신청 또는 정정청구에 의하여 전체 청구항이 취소결정 또는 삭제된 경우, 이는 기술평가착수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음
 주(2) 정정청구에 의하여 전체 청구항이 삭제된 경우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제1절 실용신안법

제2절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절 실용신안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55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實用的인 考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技術의 발전을 촉진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考案"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이용한 技術的 思想의 創作을 말한다.
2. "登録實用新案"이라 함은 實用新案登録을 받은 考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考案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 또는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節次의 無效) ①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제11조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命令을 받은 者가 指定된 期間내에 補正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無效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節次가 無效로 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부터 14日이내에 補正命令을 받은 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無效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그 期間의 滿了日부터 1年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제3조의2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로부터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을 얻지 아니하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이나 그 취하, 실용신안권의 포기, 제54조·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또는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제3조의3 (복수당사자의 대표) ①2인 이상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

제3장 선행특 실용신안 법령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포기·취하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 또는 그 취하
3.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
4. 제54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第4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5조 및 同法 第17條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4條중 "出願審査의 請求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人"으로 본다.<개정 2001.2.3>

[적용: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

第2章 實用新案登録要件 및 實用新案登録出願

第5條 (實用新案登録의 要件) ①産業上 利用할 수 있는 物品의 形狀·構造 또는 組合에 관한 考案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録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録出願전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考案
2. 實用新案登録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公衆이 이용가능하게 된 高안

②實用新案登録出願전에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의하여 極히 容易하게 考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高안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録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01.2.3>

③實用新案登録出願한 考案이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을 하여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후에 登録公告된 他實用新案登録出願 또는 出願公開되거나 登録公告된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 發明과 동일한 경우에 그 考案에 대하여

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와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나 특허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시의 출원인과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이나 특허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삭제 <2001.2.3>

2. 삭제 <2001.2.3>

④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3項중 "出願公開"는 "出願公開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國際公開"로,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이나 發明"은 "國際出願일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第6條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①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考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고안은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2.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의사에 반하여 그 考案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그 고안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삭제 <2001.2.3>

나. 삭제 <2001.2.3>

다. 삭제 <2001.2.3>

라. 삭제 <2001.2.3>

②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實用新案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實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는 考案)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考案에 대하여는 第5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1. 國旗 또는 勳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考案
2.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하거나 公衆의 衛生을 해할 염려가 있는 考案

第8條 (선출원<개정 2001.2.3>) ①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동일한 考案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人만이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實用新案登錄出願人도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다른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이 特許出願人보다 먼저 出願한 경우에 한하여 그 考案에 대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1.2.3>

④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과 특허출원된 발명이 동일한 경우로서 그 實用新案登錄出願과 特許出願이 같은 날에 出願된 것인 경우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만 權利設定登錄을 받기로 特許出願人和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⑤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이 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각하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⑥考案者 또는 發明者외의 者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행한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은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9條 (實用新案登錄出願) ①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實用新案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考案의 명칭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

6. 삭제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明細書와 圖面 및 要約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1. 考案의 명칭
2. 圖面의 簡單한 說明
3. 考案의 詳細한 說明
4.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

③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는 그 考案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者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考案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項(이하 "請求項"이라 한다)이 1이상 있어야 하며, 그 請求項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考案의 詳細한 說明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考案이 명확하고 簡潔하게 기재될 것
3. 考案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

⑤第2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請求範圍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要約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
령으로 정한다.

第10條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범위) ①實用新案登錄出願은 1考案을 1實用新案登錄
出願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1群의 고안에 대하여
는 1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1實用新案登錄出願의 요건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11條 (節次の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實用新案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제3조의2 또는 제4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3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최초 1年分の 登錄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기초적 요건의 심사 및 출원각하) ①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실용신
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하게 한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인지의 여부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의 여부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적합한지 또는 제10
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춘것인지의 여부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고, 그
기재가 명료한 것인지의 여부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
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②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
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 아닌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
는 경우
3.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한 경우

5.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제1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③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

第13條 (實用新案登錄出願등의 補正)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는 그 사건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係屬중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補正을 할 수 있다. 다만,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에 대하여는 實用新案登錄出願日부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을 경과한 후에는 이를 補正할 수 없다.<개정 2001.2.3>

②삭제<2001.2.3>

제14조 (명세서 등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2.3]

第15條 (이중출원의 보정에 관한 취급 등<개정 2001.2.3>) ①삭제<개정 2001.2.3>

②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二重出願은 그 出願書를 제출한 때에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第16條 (分割出願) ①實用新案登錄出願人은 2이상의 考案을 하나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그 일부를 1이상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부터 分割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이하 "分割出願"이라 한다)은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分割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分割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分割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29條

第3項에서 規定하는 實用新案登録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는 경우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분할출원서에 그 취지 및 분할의 기초가 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④分割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는 者は 同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分割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17條 (二重出願) ①特許出願을 한 者は 特許法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결정서 等본을 送達받기 전까지 그 特許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의 特許請求範圍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 實用新案登録出願(이하 "二重出願"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特許出願에 대하여 최초의 특허결정등본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동법 제132조3의 특허결정에 대한 審判請求期間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期間)이 경과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을 하는 者は 實用新案登録出願時 實用新案登録出願書에 그 趣旨 및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 있는 경우에 그 實用新案登録出願은 特許出願을 한 때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實用新案登録出願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二重出願時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實用新案登録出願이 第5條第3項에서 規定하는 他實用新案登録出願 또는 特許法 第29條 第3項에서 規定하는 實用新案登録出願에 해당하여 第5條第3項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2. 第6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3. 第1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4.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録出願에 있어서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는 者は 同條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同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二重出願을 한 날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18條（實用新案登錄出願 등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實用新案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그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에 대하여 그가 당해 出願日전에 행한 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出願(實用新案登錄이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것에 한하며, 이하 "先出願"이라 한다)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기초로 하여 優先權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1. 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年을 경과하여 出願된 경우
 2. 先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 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 다. 特許法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 라. 特許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
 3.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選출원이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4.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先出願에 대한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5. 先出願이 그 實用新案登錄出願時에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경우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을 주장하고자 하는 者는 實用新案登錄出願時 實用新案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및 先出願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한 자중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選출원일(選출원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당해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01.2.3>
-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錄出願된 考案중 그 優先權主張의 기초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 파리 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3項 本文, 第6條 第1項·第8條第1項 내지 第4項·第38條第3號·第39條·第41條第1項 및 第2項,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36조제4항, 제42조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3條, 特許法 第36條第3項 및 同法 第98條, 디자인보호법 第45條 및 同法 第52條第3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案

登録出願은 先出願의 出願時에 出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2004.12.31>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중 당해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그 先出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 또는 工業所有權보호를위한과리條約 第4條D(1)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出願인 경우에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第5條第3項 本文 또는 特許法 第29條第3項 本文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實用新案登録出願이 登録公告된 때에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 또는 登録公告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先出願이 第5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許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第5條第4項중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과 그 出願翻譯文에 다같이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 또는 發明"으로 본다.

第19條 (先出願의 취하등) ①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先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2.3>

1. 포기·취하·무효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先出願을 基礎로 한 優先權主張이 取下된 경우
4.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된 경우

②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인은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優先權主張을 取下할 수 없다.

③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主張을 수반하는 實用新案登録出願이 先出願의 出願日부터 1년 3월이내에 取下된 때에는 그 優先權主張도 동시에 取下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①특허법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특허법 제35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는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7조제1항제2호중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본다.

③특허법 제54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7항중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의 자"로, "最先日부터 1년 4월 이내"는 "최선일부터 1년 4월 이내로서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받기 전"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第3章 實用新案 技術評價

第21條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 ①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實用新案權의 소멸후에도 할 수 있다. 다만,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이 取消되거나 이 法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에 의하여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取下할 수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의 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제3항·제4항 또는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추가로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審査官에 의한 實用新案技術評價) ①特許廳長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審査官으로 하여금 登錄實用新案에 관하여 技術評價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②特許法 第57條第2項의 規定은 審査官의 資格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3條（請求事實의 公報掲載） ①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録出願의 登録公告전에 實用新案登録出願에 關한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登録公告時에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録公告후에 登録實用新案에 關하여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實用新案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者가 아닌 者로부터 技術評價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實用新案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條（先行技術의 調査 등〈개정 2001.2.3〉） ①特許廳長은 실용신안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先行技術의 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特許法 제58조제2항 및 제58조의2의 규정은 실용신안기술평가 등에 關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지정기준 등 지정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과 資料調査의 의뢰절차 등에 關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개정 2001.2.3>

第25條（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録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實用新案登録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규정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權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②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録을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3項·第4項 또는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趣旨 및 理由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③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기술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取消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を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01.2.3>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録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개정 2001.2.3>

第26條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方式) ①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謄本을 技術評價請求人 및 實用新案權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27條 (기술평가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개정 2001.2.3>) ①實用新案權者는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訂正請求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録請求範圍를 減縮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訂正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③審査官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訂正請求가 있는 때에는 技術評價請求人이 實用新案權者가 아닌 경우에는 그 技術評價請求人에게 訂正請求書의 副本을 送付하여야 한다.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④特許法 제77조제3항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録의 訂正에 關하여 準用한다.<개정 2001.2.3>

⑤특허청장은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第28條 (技術評價節次의 中止등) ①技術評價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決定이 確定되거나 審決이 確定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당해 技術評價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개정 2001.2.3>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中止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止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제28조의2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42조,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실용신안의 기술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12.11>

[본조신설 2001.2.3]

第4章 登録料 및 實用新案登録등

第29條 (登録料) ①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録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實用新案權者는 登録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料중 최초 1年分の 登録料는 實用新案登録出願(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割出願 또는 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録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제29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추가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실용신안권자

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 (등록료의 보전) ①특허청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제29조제3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료의 보전(補填)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료를 보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등록료를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2. 등록료를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보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2.12.11]

[중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02.12.11>]

제29조의4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회복 등<개정 2002.12.11>) ①실용신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중 늦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은 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11>

③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실시 중인 등록고안의 실용신안권이 소멸한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실용신안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5.5.31>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실용신안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11, 2005.5.31>

⑤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고안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개정 2005.5.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본조신설 2001.2.3]

[제29조의3에서 이동 <2002.12.11>]

第30條 (手數料) ①實用新案登録에 관한 節次를 밟는 者 또는 實用新案技術評價를 請求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와 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登録料 등의 반환) ①납부된 登録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잘못 납부된 登録料 및 手數料

2.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録料 해당분

3.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出願에 대하여 납부된 登録料

4.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된 출원에 대하여 납부된 등록료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第1號의 登録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同項第2號 및 第3號의 登録料의 반환은 無效處分·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개정 2001.2.3>

第32條（實用新案登錄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實用新案登錄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2.12.11>

1. 實用新案權의 設定·移轉·소멸·회복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3. 實用新案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목적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에 관한 事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준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登錄實用新案의 明細書 및 圖面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는 實用新案登錄原簿의 일부로 본다.

④實用新案登錄原簿의 登錄節次 및 作成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3條（實用新案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實用新案權者에게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證이 實用新案登錄原簿 기타 이에 준하는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거나 職權으로 實用新案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審決에 따라 새로운 實用新案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34條（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제80조 및 제83조의 規定은 登錄料 및 實用新案登錄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第5章 實用新案權

第35條（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 및 登錄公告） ①實用新案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實用新案登錄出願이 第11條 各號의 1 또는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出願이 포기 또는 取下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特許權이 포기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된 경우에 한하여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1. 二重出願에 있어서 당해 二重出願의 기초가 된 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이 設定登錄된 경우
2. 實用新案權登錄出願을 기초로 하여 特許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이하 이 號에서 "二重特許出願"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二重特許出願에 대하여 特許權이 設定登錄된 경우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때에는 그 登錄 實用新案에 관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취급하도록 명령된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될 때까지 第3項의 登錄公告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秘密取扱命令이 解除된 때에는 지체없이 登錄公告를 하여야 한다.

⑤特許廳長은 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날부터 3月간 出願書類 및 그 부속물건을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第3項의 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고안이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삭제<2001.2.3>

2. 삭제<2001.2.3>

⑦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公報에 登錄公告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 ①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②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5條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權利者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이 實用新案登錄된 경우 第1項의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의 實用新案登錄出願日의 다음 날부터 起算한다.

③삭제<2001.2.3>

④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二重出願의 出願書を 제출한 때에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것으로 보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그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이중출원의 기초가 된 특허출원의 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1.2.3>

第37條（實用新案權의 效力） 實用新案權者는 業으로서 그 登録實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録實用新案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8條（實用新案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實用新案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研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録實用新案의 실시
2. 國內을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裝置 기타의 물건
3. 實用新案登録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第39條（他人의 登録實用新案등과의 관계）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録實用新案이 그 實用新案登録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録實用新案·特許發明이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것이거나 당해 實用新案權이 그 實用新案登録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용신안권자·특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실용신안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2004.12.31>

第40條（無效審判請求登録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實用新案登録 또는 特許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録전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登録實用新案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考案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기의 特許發明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發明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考案 또는 發明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實用新案登録이나 特許가 無效로 된 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同一考案에 대한 2이상의 實用新案登録중 그 하나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2. 登録實用新案과 特許發明이 동일하여 그 特許를 無效로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3.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하고 동일한 考案에 관하여 正當한 權利者에게 實用新

案登録을 한 경우의 原實用新案權者

4. 特許를 無效로 하고 그 發明과 동일한 考案에 관하여 正當한 權利者에게 實用新案登録을 한 경우의 原特許權者

5. 第1號 내지 第4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實用新案權 또는 特許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録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録을 받은 者. 다만, 特許法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録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1條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개정 2004.12.31>) ①實用新案登録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録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録된 디자인권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②實用新案登録出願日전 또는 實用新案登録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録된 디자인권이 그 實用新案權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디자인권에 대한 專用實施權을 가진 者 또는 그 디자인권이나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디자인보호법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登録한 通常實施權에 한한다)을 가진 者는 原權利의 범위안에서 당해 實用新案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디자인권의 存續期間 만료당시에 존재하는 實用新案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게 된 者는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2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第97條·第99條 내지 제103조·제106조 내지 제116조·제118조 내지 제125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개정 2001.2.3>

第6章 實用新案權者の 보호

第4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録實用新案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件을

業으로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건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는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第44條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등본의 제시<개정 2001.2.3>) 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의 謄本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자기의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01.2.3>

第45條 (實用新案權者등의 책임) ①實用新案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侵害者등에 대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후에 그 實用新案登録에 대하여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第4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審決을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權利의 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相對方에게 입힌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維持決定에 근거하거나 기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은 訂正請求 또는 訂正審判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이 訂正됨으로써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録時의 實用新案登録請求範圍에 기재된 考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 權利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6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第126條·第128條·제130조·제131조 및 제132조의 規定은 實用新案權者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0조중 "他人의 特許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侵害한 者"는 "제25조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타인의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로 본다.<개정 2001.2.3>

第7章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

第47條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 ①實用新案登録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登録公告日부터 3月 이내에 實用新案登録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録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개

정 2001.2.3>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第44조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第33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第9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②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書에 필요한 證據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2.3>

1.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實用新案登録의 表示
4.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證據의 表示

③第49條第4項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第70條 내지 第78條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77조제3항 전단중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은 "제136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으로 보며, 동법 제78조제1항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또는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 본다.<개정 2001.2.3>

第8章 審判·再審 및 訴訟

第49條 (實用新案登録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實用新案登録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

登録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2.3>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法 第5條·第7條·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제9조제3항·제4항 또는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33조제1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規定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實用新案登録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 享유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登録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4의2.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5. 第35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録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實用新案權의 專用實施權者 기타 實用新案登録에 관하여 登録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①제4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정정청구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③심판장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4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 내지 제10항,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56조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9항중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審理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審理終決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한하여"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第50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實用新案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録實用新案의 保護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 實用新案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實用新案登録請求範圍의 請求項이 2이상인 때에는 請求項마다 請求할 수 있다.

第51條 (訂正審判) ①실용신안권자는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기술평가·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또는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의 범위 이내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1.2.3>

④審判官은 第1項의 審判請求가 제27조제2항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請求人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2.12.11>

⑤第1項의 審判은 實用新案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第25條 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이 取消되거나 審決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이 無效로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實用新案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39條 第1項, 이 法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00條第4項 및 同法 第10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第1項의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⑦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허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⑧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訂正을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후의 明細書 또는 圖面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 및 實用新案權의 設定登録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한 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가 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제5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⑩특허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第52條 (訂正의 無效審判)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제27조제1항, 제49조의2제1항 또는 제51조제1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정정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제27조제2항 각호의 1
2. 제51조제2항 또는 제3항(제4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7조제4항 또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7조제3항중 동법 제13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1

②第49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피청구인이 되는 실용신안권자는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2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④제49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訂正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訂正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第53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録實用新案이 第39條의 規定에 해당되어 그 登録實用新案의 실시 許諾

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許諾要請을 받은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登録實用新案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그 登録實用新案이 그 登録實用新案의 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録實用新案 또는 特許發明에 비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第1項의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録實用新案의 실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실시를 필요로 하는 登録實用新案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與를 받은 通常實施權者는 實用新案權者·特許權者·디자인권자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⑤第4項의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登録實用新案·特許發明 또는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類似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第54條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審判<개정 2001.2.3>) 第25條第1項 또는 第48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7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받은 者가 不服이 있는 때에는 取消決定謄本을 送達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개정 2001.2.3>

제54조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第55條 (審判請求方式) ①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書에 特許法 第140條의2第1項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當事者の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審判請求人の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審判事件의 표시
4.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審判請求書의 補正은 그 요지를 變更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③第53條第1項의 通常實施權 許與審判의 審判請求書에는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실시를 요하는 자기의 實用新案登録의 番號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他人의 特許發明·登録實用新案이나 등록디자인의 番號·명칭 및 特許나 登録의 年月日

3. 特許發明·登録實用新案 또는 등록디자인의 通常實施權의 範圍·期間 및 對價

④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등록실용신안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⑤第51條第1項의 訂正審判을 請求할 때에는 審判請求書에 訂正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第56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第139條·第140條의2第2項·第141條 내지 第166條·第171條第2項·第172條·第176條 및 同法 第178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140條의2第2項중 "特許異議申請人"은 "實用新案技術評價請求人 또는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人"으로, 第164條第1項중 "特許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實用新案技術評價의 請求 또는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으로, 第172條중 "審査 또는 特許異議申請"은 "審査·實用新案技術評價 또는 實用新案登録異議申請"으로 각각 본다.

第9章 特許協力條約에 의한 國際出願

第57條 (國際出願에 의한 實用新案登録出願) ①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國際出願日

이 인정된 國際出願으로서 實用新案登錄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이하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第20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54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8條 (新規성이 있는 考案으로 보는 경우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에 관하여 第6條第1項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을 適用 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第6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期間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할 수 있다.

第59條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翻譯文) ①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特許協力條約 第2條(xi)의 優先日(이하 "優先日"이라 한다)부터 2년 6월(이하 "국내서면제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要約書의 國語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同條約 第19條(1)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의 範圍에 관한 補正을 한 때에는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하여서만 國語翻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11>

②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翻譯文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語翻譯文을 제출한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그 翻譯文에 갈음하여 새로운 國語翻譯文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出願人이 特許協力條約 第23條 (2) 또는 第40條 (2)의 規定에 의한 請求(이하 "國內處理의 請求"라 한다)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나 請求의 範圍에 기재된 사항 및 圖面중의 說明部分으로서 國內書面提出期間의 만료일(그 期間내에 出願人이 國內處理의 請求를 한 때에는 그 請求日을 말하며, 이하 "基準日"이라 한다)까지 제출된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翻譯文(이하 "出願翻譯文"이라 한다)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 및 請求의 範圍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圖面중의 說明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出願書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出願書로 본다.

⑥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 出願翻譯文(國語로 출원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은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明細書·圖面 및 要約書로 본다.

[적용:第59條第6項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 효력에 관한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16條 (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查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局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⑦第6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翻譯文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⑧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후의 請求의 範圍에 대한 國語翻譯文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請求의 範圍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60條 (實用新案登錄出願등에 의한 優先權主張의 特例)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하여는 第18條第2項 및 第19條第2項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第18條第4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同項중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의 說明部分에 한한다) 및 이 書類들의 出願翻譯文 또는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을 제외한다)"으로, "登錄公告"는 "登錄公告 또는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규정하는 國際公開"로 본다.

③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 또는 特許法 第1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特許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第4項 및 第19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59條第1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 同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59條第1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제출된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그 先出願에 관하여 出願公開"는 "그 先出願에 관하여 特許協力條約 第21條에서 規定하는 國際公開"로 보며, 第19條第1項중 "그 出願일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는 "第59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0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日 또는 第59條第1項이나 特許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

에 의한 國際出願日부터 1年 3月을 경과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④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出願이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 또는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인 경우에 第18條第1項·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19條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第1項 및 第3項중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고, 第18條第4項중 "先出願의 出願書에 최초로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은 "先出願의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의 國際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으로 보며, 第19條第1項중 "그 出願日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는 "第71條第4項 또는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부터 1年3月을 경과한 때 또는 第71條第4項이나 特許法 第214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결정을 한 때중 늦은 때"로 본다.

第61條 (書面の 제출) ①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은 國內書面提出期間내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2002.12.11>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2001.2.3>
4. 考案의 명칭
5. 考案者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6. 國際出願日 및 國際出願番號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11>

1.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해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신설 2002.12.11>

第62條 (圖面の 제출) ①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은 國際出願日에 제출한 國際出願이 圖面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圖面(圖面에 관한 간단한 說明을 포함한다)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基準日까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の 제출이 없는 때에는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圖面の 제출을 명할 수 있다. 基準日까지 第59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圖面の 國語翻譯文의 제출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圖面の 提出命令을 받은 者가 그 지정된 期間내에 圖面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으로 본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補正期間은 圖面の 제출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3條 (國際調査報告書を 받은 후의 補正) ①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 (1)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調査報告書を 받은 후에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請求의 範圍에 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翻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國語翻譯文에 의하여 第13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請求의 範圍가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19條 (1)의 規定에 의한 說明書を 同條約 第2條 (xix)의 國際事務局(이하 "國際事務局"이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說明書の 國語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の 國語翻譯文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19條 (1)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 또는 說明書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2項의 補正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64條 (國際豫備審査報告書 작성전의 補正) ①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 第34條 (2)(b)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豫備審査報告書가 작성되기 전에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 및 圖面에 대하여 補正을 한 경우에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는 基準日까지 당해 補正書의 國語翻譯文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正書의 國語翻譯文이 제출된 때에는 그 補正書의 國語翻譯文에 의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明細書 및 圖面이 補正된 것으로 본다.

③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人이 基準日까지 第1項에서 規定한 節次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特許協力條約 第34條 (2)(b)의 規定에 의한 補正書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65條 (補正의 特例) ①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補正(第63條第2項 및 第64條 第2項에 의한 補正을 제외한다)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및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語翻譯文(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하고 基準日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적용:第65條第1項중 國語로 출원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翻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16條 (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査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局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②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28條 (1) 또는 同條約 第41條 (1)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補正에 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 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실용신안 등록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1.2.3>

第66條 (二重出願時期의 제한) 特許法 第19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에 出願된 特許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二重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法 第8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납부하고 同法 第20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翻譯文(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제출한 후(特許法 第2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것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제67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

하여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02.12.11]

제68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고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되어 있는 고안
2.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을 제외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전문개정 2002.12.11]

第69條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時期의 제한)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에 관한 實用新案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하여 第21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1項중 “누구든지”는 “基準日을 경과한 후에는 누구든지”로 본다.

第70條 (登録料納付의 特例)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의 최초 1年分 登録料의 納付에 대해서 第29條를 적용함에 있어서 同條第2項중 “實用新案登録出願(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分割出願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二重出願의 경우에는 각각 分割出願 또는 二重出願을 말한다)과 동시에”는 “第59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國內書面提出期間內(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內處理의 請求를 한 경우에는 그 國內處理의 請求時까지)”로 본다.

第71條 (決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되는 國際出願) ①國際出願의 出願人은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을 받기 위하여 大韓民國을 指定國으로 지정한 國際出願이 同條約 第2條 (xv)의 受理官廳에 의하여 同條約 第25條 (1)(a) 또는 (b)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日의 인정거부 또는 國際出願의 取下로 보는 趣旨의 宣言이 행하여지거나 國際事務局에 의하여 同條 (1)(a)의 規定에 의한 記錄原本不受理의 인정이 행하여진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同條 (2)(a)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決定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하는 者는 申請書에 明細書·請求의 範圍 또는 圖面(圖面중 說明部分에 한한다)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國際出願에 관한 書類의 國語翻譯文을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인지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④特許廳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特許協力條約 및 同條約規則의 規定에 따라 정당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에 관한 國際出願은 그 國際出願에 대하여 거부·宣言 또는 인정이 없었다면 國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본다.

⑤第57條第2項·第58條·第59條第4項 내지 第8項·第60條第1項 및 第2項·第62條·第65條 및 第67條 내지 第70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際出願日로 인정될 수 있었던 날에 出願된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보는 國際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録出願으로 간주되는 國際出願의 補正에 대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同項 但書중 "實用新案登録出願日"은 "第71條第4項에서 規定하는 정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決定을 한 날"로 본다.

第72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第192條 내지 第198條의2·第206條·第210條 및 同法 第211條의 規定은 國際實用新案登録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0條중 "出願審査의 請求"는 "國內處理의 請求"로 본다.

[적용:第7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0條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에 대한 翻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과 第7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93條第1項 및 同法 第198條의2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16條 (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査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局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第10章 補則

第73條 (實用新案公報) ①特許廳은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實用新案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實用新案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實用新案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1.2.3>

第74條 (2 이상의 請求項이 있는 實用新案登錄 또는 實用新案權에 관한 特則) 제48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74조제4항, 이 법 제21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소멸에 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제42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01조제1항제1호, 제119조제1항, 이 법 제49조제2항·제3항, 제51조제5항, 제56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139조제1항, 제181조, 제182조 또는 特許法 제104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는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 또는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이를 適用함에 있어서는 請求項마다 實用新案登錄이 되거나 實用新案權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第75條 (實用新案登錄 표시) 實用新案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 實用新案에 관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를 할 수 있다.

第76條 (虛僞表示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實用新案登錄된 것이 아닌 물품,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實用新案登錄表示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 表示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表示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전시하는 행위
3. 第1號의 물품을 生産·사용·讓渡 또는 貸與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實用新案登錄이나 實用新案登錄出願된 것으로 表示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表示를 하는 행위

第77條 (特許法の 準用) 特許法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 내지 제220조, 제222조 및 제224조의2의 規定은 實用新案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 第217條 및 第217條의2중 "審査"는 "實用新案 技術評價"로 본다.<개정 2001.2.3>

第11章 罰則

第78條 (侵害罪) ①實用新案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79條 (偽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 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80條 (虛偽表示의 罪) 第7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1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實用新案登錄,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또는 심판에 대한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2.3>

第82條 (秘密漏泄罪등) 特許廳 職員·特許審判院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그 職務상 알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의 考案에 관하여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3條 (전문조사기관 등의 任·職員에 대한 公務員 擬制<개정 2001.2.3>) 전문조사기관 또는 제77조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許文書電子化機關의 任員·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이 法 第82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特許廳 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로 본다.<개정 2001.2.3>

第8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8條第1項·第80條 또는 第8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범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개정 2001.2.3>

1. 제78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0조 또는 제81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第85條 (沒收등) ①第78條第1項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성한 物品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物品은 이를 沒收하거나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物品을 被害者에게 교부할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②被害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物品의 價額을 초과하는 損害의 額에 한하여 賠償을 청구할 수 있다.

第86條 (過怠料)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2002.1.26>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正當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4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實用新案의 實施報告의 命令에 正當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正當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577호, 19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8條의2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1999年 1月 1일부터 적용하고, 이 法 第59條第6項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의 明細書·請求의 範圍·圖面 및 要約書의 효력에 관한 規定, 第65條第1項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翻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 第7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0條중 國語로 出願된 國際特許出願에 대한 翻譯文 제출면제에 관한 規定과 第72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93條第1項 및 同法 第198條의2의 規定은 特許協力條約 第16條 (3)(b)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 政府가 國際調査機關 선정과 관련하여 國際事務局과 締結하는 協定이 發效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중건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된 實用新案登

錄出願 및 同 實用新案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實用新案登錄, 實用新案權, 實用新案登錄異議申請,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電子文書에 의한 實用新案 關聯節次의 처리에 관한 適用例)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8條의3 내지 第28條의5 및 이 法 第77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17條의2第5項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出願되는 實用新案登錄出願부터 적용한다.

第4條 (實用新案登錄要件에 관한 適用例) 第5條第3項이 規定은 이 法 施行후에 實用新案登錄出願한 考案(이하 이 條에서 "後出願考案"이라 한다)이 이 法 施行전에 實用新案登錄出願을 하여 後出願考案의 出願日후에 出願公開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 또는 圖面에 기재된 考案과 동일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第5條 (종전의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한 新法適用의 特例) ①附則 第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當時 特許廳에 繫屬중인 實用新案登錄出願(이 法 施行日 현재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日부터 6年을 경과한 出願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出願人의 申請이 있는 경우 당해 實用新案登錄出願에 대하여는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이내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許廳長에게 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第36條第1項 또는 종전의 第4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登錄出願으로 간주된 國際出願에 대한 이 法 적용의 申請은 申請當時에 종전의 第37條第1項 및 종전의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翻譯文 및 書面을 제출하고 종전의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은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日에 出願된 것으로 보며, 당초의 實用新案登錄出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日에 取下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을 받게 된 實用新案登錄出願의 出願書에 첨부된 明細書·圖面 또는 要約書의 補正은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書를 제출한 날부터 第13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할 수 있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중 "實用新案法 第11條"를 "實用新案法 第20條"로 한다.

②法院組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4第1號 및 第54條의2第2項중 “實用新案法 第35條”를 각각 “實用新案法 第55條”로 한다.

부칙 〈제6412호,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9조제1항, 제28조의2중 특허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관한 부분, 제31조제2항·제3항,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17조제1항 단서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원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기초적요건심사·실용신안등록·실용신안권·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기술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기술평가청구서를 각하함에 있어서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를 적용한다.
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실용신안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함에 있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동조동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동법 제136조제9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5.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5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및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한다.

<17>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766호,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실용신안기술평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실용신안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③(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實用新案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登録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意匠權"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意匠權"을 각각 "

디자인권"으로, "原意匠權者"를 "원디자인권자"로, "原意匠權"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意匠權"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意匠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意匠權者"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登錄意匠"을 "등록디자인"으로, "意匠"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登錄意匠"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내지 <16>생략

부칙 〈제7555호,2005.5.31〉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전기통신회선)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
2.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학교 또는 외국의 국·공립대학
3.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
4. 특허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허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②법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의 학교 또는 외국의 사립대학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술단체
 - 가.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술단체
 - 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설립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단체에 가입된 학술단체
 - 다. 특허청에 신고한 학술단체

[본조신설 2001.6.27]

제2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2003.6.13>

③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이상의 항을 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2 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 없다. <개정 2003.6.13>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3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고안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3.6.13]

제4조 (기술평가의 청구방법)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삭제 <2001.6.27>
3. 기술평가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실용신안의 표시
4. 삭제 <2001.6.27>

제5조 (실용신안공보)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2003.6.13>

1.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4. 실용신안등록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5. 등록공고연월일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이중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기술평가청구에 관한 사항
9.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
10. 법 제27조 및 법 제48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77조, 법 제49조의2,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된 내용
- 10의2. 당해 고안의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안내문
11. 기타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 및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시행령 제17조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는 "실용신안법 제3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통지서, 출원각하결정통지서"로, 동령 제18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실용신안 기술평가·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실용신안권의 취소에 관한 심결문 또는 결정문"으로 본다. <개정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심판 등에 있어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6421호,19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47호,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96호,2003.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11.30 산업자원부령 31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1>

제2조 (출원인코드의 부여등) ①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출원인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
3.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인
4. 실용신안등록 이의답변인
5. 정정청구인
6. 실용신안권자(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7.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인
8. 등록공고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한 정보제출인
9. 심판청구인·심판피청구인 및 심판참가인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이하 "출원인코드"라 한다)의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③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인감·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5.2.11>

④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3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서류로 한다. <개정 2002.2.28, 2003.12.31, 2005.2.11>

1. 전자적기록매체제출서
2. 전자문서첨부서류제출서
3. 서류(건본, 물건, 증거물건)제출서
4. 실용신안등록증정정교부신청서
5.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의 규정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관련서류(「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9호의2서식, 별지 제51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의2서식, 별지 제55호의2서식, 별지 제57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의2서식, 별지 제61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5호(2)서식, 별지 제65호의2(2)서식, 별지 제65호의4(2)서식, 별지 제65호의6(2)서식, 별지 제65호의8(2)서식, 별지 제65호의11(2)서식, 별지 제65호의13(2)서식, 별지 제65호의15(2)서식, 별지 제65호의17(2)서식, 별지 제65호의19(2)서식, 별지 제65호의21(2)서식, 별지 제65호의23(2)서식, 별지 제65호의25(2)서식, 별지 제65호의27(2)서식, 별지 제65호의29(2)서식, 별지 제65호의31(2)서식 및 별지 제65호의39서식에 한한다)
6.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신청서
7. 전자화내용정정신청서
8. 삭제 <2003.5.17>

②삭제 <2002.2.28>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용신안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에 해당되는 출원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유지요청의 해제통지 또는 영 제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에서의 해제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2.28, 2005.2.11>

제4조 삭제 <2003.5.17>

제5조 (서류의 원용) ①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2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때에 있어서의 제출서류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3장 선통특 실용신안 법령

제6조제2항 및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증명서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그중 1건에 대하여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②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 법 제6조제2항,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4항, 이 규칙 제2조,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동일하여 이를 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서류를 원용하는 취지를 명기하고 그 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을 하는 경우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을 하는 경우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는 경우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2.11>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 그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 위임등록을 한 대리인이 그 포괄위임의 범위안에서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

제6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개정 2001.6.30>)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 1%>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명세서·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

칙」 별지 제12호서식,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11>

제7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개정 2001.6.30))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심판에 관한 서류 또는 견본 기타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적법한 실용신안등록출원·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2005.2.11>

1.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건마다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출원서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명세서에 고안의 상세한 설명 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출원서류 등인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인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기간중 연장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9.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0조제1항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유 등의 보정기간, 법 제54조 또는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연장신청서인 경우
 10.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가 종료된 후 그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인 경우
- 10의2. 삭제 <2003.5.17>

10의3. 삭제 <2003.5.17>

11. 당해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없는 자가 그 절차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인 경우

1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동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 동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서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3. 온라인이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의2.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 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8조 (서류등의 보정) 법 제11조 내지 제13조 또는 이 규칙 제2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8조제3항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서지사항(명세서 등)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2005.7.1>

1.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서류 1통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8조의2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의 보정신청서를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7, 2005.2.11>

1.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49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3. 법 제51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한 등록실용신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고자 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5.2.11>

1. 삭제 <2002.2.28>
2. 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49조의2제4항, 법 제51조제6항,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9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도면 또는 요약서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2월이내로 한다.

제10조 (기술평가청구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제11조 (기술평가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관은 기술평가청구된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유지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용신안기술평가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실용신안등록번호
2. 고안의 명칭
3. 기술평가청구인·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기술평가청구인·실용신안권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제12조 (의견제출통지등)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2. 법 제27조제4항 또는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대한 정정불인정 통지
3.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3조 (의견서) 법 제25조제3항, 법 제27조제4항·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 법 제51조제4항(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절차 및 정정무효심판절차에서 법 제51조제4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2.1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4조 (기간의 지정) ①법 제11조, 법 제12조, 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1조 및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월이내로 하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와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당해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법정(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의한다. <개정 2005.2.11>

③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5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5.2.11>

제15조 (정정청구서)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정정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7조제1항, 법 제49조의2제1항 및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전문개정 2001.6.30]

제16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실용신안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②특허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생략:서식4%>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할인하고, 당해실용신안등록증에 편철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안자의 추가기재 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고안자중 일부의 고안자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오기한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전까지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18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일)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등록공고일은 당해실용신안등록출원이 등록공고된 취지를 기재한 실용신안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 (등록공고된 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1. 간행물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0조 (심판청구서)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49조 내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청구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②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제21조 (고안의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58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그 기간내에 출원인이 국내처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제22조 (번역문등의 제출) ①법 제59조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번역문등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번역문등의 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어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3.5.17>

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한다)의 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5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내처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국내처리청구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61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제1항제8호에 의한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5.17, 2003.12.31, 2005.2.11, 2005.7.1>

④법 제61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3.5.17>

제23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법 제59조제1항 또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또는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요약서에 의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제24조 (결정의 신청기간 등)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거부·선언 또는 인정이 출원인에게 통지된 날부터 2월로 한다.

②「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제25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7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라 함은 당해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특허협력조

제3장 선등록 실용신안 법령

약」 제2조(xv)의 규정에 의한 수리관청 또는 동조(xix)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와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2.11>

제26조 (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고안의 명칭
3.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 또는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제27조 (준용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8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6조, 제37조의2,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5조의2, 제58조, 제60조 내지 제69조, 제72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1조의3제3항"은 "「실용신안법」 제29조의4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01.6.30, 2003.5.17, 2005.2.11, 2005.9.1>

② 「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규정은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③ 「특허법 시행규칙」 제107조 및 제107조의2, 제108조 내지 제110조, 제112조의2, 제113조, 제113조의2,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은 법 제57조 또는 법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2.11>

부칙 〈제66호, 1999.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106조 및 제106조의2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①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74조 내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된 국제출원,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06조의10 내지 제106조의46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발효되는 날 이후 최초로 출원인에 대한 조사용사본 수령일의 통지가 있는 국제출원 또는 최초로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있는 국제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제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우선권서류사본의 도달공고를 하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577호 실용신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각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약서·명세서·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신법적용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부칙(특허법시행규칙) 〈제114호,2000.10.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요령란 제5호중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부칙 〈제128호,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02.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중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중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의 무효심판 및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사항은 각각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자문서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거나 청구되는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및 심판부터 적용한다.

③(부분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기술평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3호,2003.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2003.12.31〉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05.2.11〉

이 규칙은 2005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 이후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보정을 명하는 출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호,2005.9.1〉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5.11.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서식1의2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명세서등보정서

서식2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서

서식2의2 정정청구서

서식3 실용신안등록증

서식4 실용신안등록을지

서식4의2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심판청구서

서식5 실용신안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

서식6 국내처리청구서

서식7 삭제(2001.6.30)

편 집 위 원

편집위원장 : 이은우

간 사 : 제대식

위원 : 곽준영, 김승호, 김용준, 김희수, 박상선, 박종주,
변상현, 백온기, 손병철, 양재석, 오상진, 우동기,
윤세영, 이기현, 정용익, 정재훈, 정현수, 좌승관,
한덕원, 허수준

선등록 실용신안 심사가이드

발행일 : 2006년 4월 발행

발행처 : 특허청(기계금속건설심사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전화 042) 481-5390~5403

FAX 042) 472-3470

ISBN 89-91994-18-0 13500